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프랑스편

고종환



글로벌법제 연구 12-22-⑤-3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프랑스 편 -

고 종 환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프랑스 편-

Study on Legislation of the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 France -

연구자 : 고종환 (아주대학교 외래교수)
Ko, Jong-Hwan

2012. 11.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최근 경향: 2012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수가 인구 대비 약 2.2% 수준인 약 110만 명을 넘어섰다.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에 들어 선 한국의 경우도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
-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국가로서 다문화 사회를 보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제들을 시행중.
- 오랜 시간 축적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프랑스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미흡했던 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다양한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 교육과 법제들을 생각.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에 대한 문제들을 겪은 다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다양한 국가 정책들과 다문화 교육정책 그리고 다양한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자 함.

-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법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갈등 없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다문화 교육 정책과 법제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함.

II. 주요 내용

-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
 - 일반적 의미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며, 프랑스에서는 특히 소수인종과 소수집단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가져 함께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으로 다문화 교육의 정의임.
 -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첫째는 다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으로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다. 즉 기존 프랑스 사람들의 다문화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위한 것. 둘째는 학교를 위주로 한 ‘정규 학습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이다. 즉 외국인 이민자 자녀 학생들에게 다문화와 프랑스 사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제도와 관련기관에 대한 내용
 - ZEP(Zone d'éducation prioritaire): ‘우선교육지구’라고 불렸던 이 정책은 사회당의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행. 학업 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교육활동을 강화해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 ELCO(Enseignements de langue et de culture d'origine): ZEP정책을 바탕으로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사회적응을 돋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이민자들이 향후 본국으로 귀국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시켜 주기위한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다.
- CEFISEM(centre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migrants): ‘이민자 자녀 학교적응을 위한 정보센터’로서 이민자 출신 가정의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통합반’과 ‘적응반’ 그리고 ‘재수강수업반’을 두었다.
- CASNAV(Centre acadé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ayages): 카스나브의 역할과 활동은 프랑스에 새롭게 정착한 프랑스어에 서툰 자녀들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것과 그들 가족들과의 협력 및 중계 역할이다. 특히 이민자 가정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학교입학 정보와 순조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중요함.

□ 프랑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

- 이주정책 부분: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
 이민, 통제, 동화, 망명에 관한 법안.
- 고용정책 부분: 기회균등 법안.
 차별퇴치에 관한 법안.
- 문화정책 부분: 기회균등 법안 제 47조.
- 언어정책 부분: 절 폐리 법안.
 바 로리올 법안.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법안.
 (일명 ‘투봉 법안’)

III. 결 론

-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프랑스의 특별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결과물임.
-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서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집단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특성상 프랑스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다.
- 프랑스 다문화교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 첫째, 학교 공교육 하에서 이민자 자녀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 시켜야 함.
 - 둘째, 정신적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 부모들과의 연계를 돈독히 함.
 - 셋째, 이민자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주류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필요.
 - 넷째, 프랑스도 기존 언어위주의 정책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직업교육 강화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신경을 써야 함.

▶ 주제어 : 프랑스 다문화교육, 다문화 법제, 다문화 교육제도, 다문화 교육기관, 다문화 역사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Research

- Recent tendency of Korea, enter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Currently in 2012,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has exceeded 1.1 million people, which is about 2.2 % of the population. As Korea is going toward the multi-cultural country, there is a need to prepare for multi-cultural society, including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 Since long ago, as a country of multi-cultural county, France has been enforcing some laws that are based on interes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 Despite interests and policies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which had been existing for a long time, France has shown a variety of conflict aspects. We should let the unsatisfactory factors of multi-cultural society, France society is facing, be a good lesson to ourselves.
- The first thing needed to solve the social conflicts is the multi-cultural education. By looking at the France'multi-cultural education and various legislations, We can think of what kind of education and legislation might be needed for our multi-cultural society.

Objective for Research

- As we are facing some minor and major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report is on the various national policie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and associated legislations of France where they have confronted the multi-cultural problems ahead of us.
- By looking a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rance's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legislations, consider what could be the education and laws for our country enter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without problems.

II . Main Contents

Multi-cultural Polic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of France

- The general mean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the effort to provide people with different social backgrounds, and different culture with equal chances of having an education. In France, the purpose and definition of their multi-cultural education is to be open to minorities and share their culture with them.
- The first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the 'education for improving perception of multi-culture', relatively direct education. In other words, it is perception change about one's point of view toward foreigners. Second direction is 'to provide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curriculum', focusing on the school education. This second one is to provide the foreign students with the right perception of multi-culture and France's society.

Educational systems and institutions about multi-culturalism in France

- ZEP(Zone d'éducation prioritaire): It is also known as ‘preemptive educational district’. As a leader of the Socialist Party, former president Mitterrand used the slogan “give more to the people who have less” and enforced it to alleviate the social and educational inequality by reinforcing educational program in the area where student's failure rate is much higher than other area.
- ELCO(Enseignements de langue et de culture d'origine): Based on ZEP, it originally designed to help the children of the immigrants to adapt to the French society system, but in fact, it was used to help the children to prepare themselves for returning to their countries.
- CEFISEM(centre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migrants): As an ‘information center for the immigrant's children to adapt their schoolwork’, it was made up of ‘integrated class’, ‘adaptation class’ and ‘retaking class’ to teach French properly for the children of the immigrants.
- CASNAV(Centre accadémique poue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s): Its role and main activity to help the children of new settlers so learn French and to be a co-operator and mediator in their home. Providing accurate and useful information about schooling is essential, but counseling and support to help their children to adjust school life is also important.

- Legislation about multi-culturalism in France
 - Migration policy: A bill about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 bill about immigration, control, assimilation and asylum
 - Employment Policy: A bill of equal opportunity.
A bill of eradicating discrimination
 - Culture policy: A bill of equal opportunity, article 47
 - Language policy: Jules Ferry law.
Bas-Lauriol law.
Mandating the use of the French language in official government publications. (alias ‘Toubon law’)

III. Conclusion

- Multi-cultural education in France is a product of th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background and its consequential needs.
- Multi-cultural education in France is based on ‘assimilation’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and help adapt minority ethnic groups assimilated into the culture. It was controversial because of its unilateral ways but it is still a good example of multi-cultural policy because it has various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 France’s multi-cultural education implies:
 - First, preserve identity of the immigrant’s children in public education system.

- Second, strengthen the moral education and their parent-children relationship.
- Third, need to change our negative perception to the immigrants.
- Fourth, focus on economical independence of the immigrants as French government changed its policy from language-oriented to vocational training-oriented.

➤ Key Words : France's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law,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education systeme, Multi-cultural education institution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목적	21
3. 연구방법과 내용	25
제 2 장 왜 지금 프랑스인가	27
제 1 절 프랑스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27
1. 다문화 선진국, 프랑스	27
2. 프랑스 연구의 세 가지 이유	28
제 2 절 다문화 정책의 유형들과 프랑스의 경우	32
1. 동화주의 정책	32
2. 차별적 배제정책	33
3. 다문화주의	35
제 3 장 프랑스 이민자 정책의 역사와 배경	41
제 1 절 프랑스의 네 단계 이민역사	42
1. 첫째 단계	43
2. 둘째 단계	45
3. 셋째 단계	46

4. 넷째 단계	48
제 4 장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	51
제 1 절 일반적인 다문화 교육	51
1.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정의	51
2. 다문화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	53
제 2 절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의 현실: 통합정책	55
1. 프랑스가 추구하는 주요가치	55
2. 프랑스의 통합정책	56
제 3 절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한계와 어려움	59
1.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	59
2. 빌리에르벨(Villiers-le-Bel) 사태	66
제 5 장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제도와 관계기관	71
제 1 절 다양한 제도와 기관	71
1. 다양한 교육제도: 우선교육지구(ZEP)의 실행과 어려움	74
2. ZEP의 주요 역점사업	78
3. ZEP을 통해 보는 교육정책의 시사점	80
4. 다양한 교육제도: 우선교육제도와 엘코(ELCO)프로그램	82
5. 다양한 교육제도: 세피젬 CEFISEM	83
6. 다양한 교육제도: 카스나브 CASNAV	84
제 2 절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문제와 과제	86
1. 실업률(Taux de chômage)	87
2. 24-45세의 프랑스인과 이주민의 실업률(최근 5년)	88

제 3 절 한국의 다문화 교육이 추구할 방향	90
제 6 장 프랑스의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	93
제 1 절 이주정책 부분	94
1. 이민법 강화의 배경과 과정	94
2.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 (일명 2006년 법률) (Projet de loi relatif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loi du 14 novembre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egration)	98
3. 이민, 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률	102
(일명 2007년 법률) (loi du 20 novembre 2007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à l'intégration et l'asile)	102
제 2 절 고용정책 부분	109
1. 기회균등법(loi pour l'égalité des chances)	111
2. 차별퇴치에 관한 법안	114
제 3 절 문화정책 부분: 기회균등법 제47조(2006년)	115
제 4 절 언어정책 부분	117
1. 줄 페리 법안(loi Jules Ferry), 1885년	118
2. 바 로리올 법안(loi Bas-Lauriol), 1975년	119
3.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법안 (일명 ‘투봉법’, loi Toubon), 1994년	120
제 7 장 나가는 말	123
참 고 문 현	12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근대 이후 동, 서양 각 나라에서 민족국가가 성립된 이후 문화의 통일성과 동일한 민족 정체성의 강조는 국가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여겨졌다. 거의 모든 근대 민족국가들은 동일한 민족과 국가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계의 안과 밖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국가적 정체성과 경계성이 20세기, 특히 중반 이후 모호해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화(mondialization)’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에 의해서였다. 세계화의 출현은 특히 한 나라의 국가를 지탱하는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선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발맞춰 각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형태의 인적교류에 힘입어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다른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처럼 한 나라, 한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의 단일 문화가 아닌 여러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작금의 현상을 ‘다문화 현상’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해서 현재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이러한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사회는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았던 경제 대국이었던 과거 미국이나 프랑스 또는 캐나다 같은 특정 국가만의 현실이 아닌 전 세계적인 경향이며 이미 각 나라들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가 됐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프랑스 같은 많은 수의 외국인 이민자들은 아니지만 매년 이 외국인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5월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 110만 688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2%수준이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해서 약 8년 후인 2020년에는 전 인구의 5%-6%에 해당하는 290만에서 300만 명의 재한 외국인 이민자의 수를 기록할 것이다. 또한 약 30년 후인 2050년경에는 대한 민국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할 것으로 추산된다.¹⁾ 이 말은 우리나라도 이미 프랑스, 캐나다 혹은 미국처럼 다문화 국가 중 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것은 곧 여러 다양한 출신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특징과 문제 혹은 크고 작은 갈등의 요소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점차 복잡해져 가고 있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처럼 다양한 인종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곧 예기치 못한 혼란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단일 민족과 단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이질적인 문화와 이질적인 정체성의 유입은 문화 상호간의 갈등이나 혼란에 관한 문제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양한 이민자들이 공존했던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양한 이민자들과 기존 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은 곧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에 역행하는 결

1) 2012년 5월1일 법무부 출입국, 행정안전부,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4959만여 명)의 2.2% 수준인 110만 6884명으로 조사됐다. 이 숫자는 작년 89만 1341명보다 24.2%(21만 5543명) 증가한 숫자다. 이를 조사대상에는 여행객 같은 단기 체류자를 제외하고 90일 이상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92만 5470명, 83.6%), 뿐 아니라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 주민(7만 3725명, 6.7%), 외국인과 귀화자의 자녀(10만 7689명, 9.7%) 등이 모두 포함됐다. 외국 국적자 중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8만 9270명)도 포함돼 있다.

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중요한 사회문제의 야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이민자들로 인한 갈등은 곧 사회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예를 지난 2005년 발생했던 프랑스의 소요사태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²⁾

물론 프랑스의 방리유 소요사태와 우리나라의 경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특히 외국인 이민자 구성원들의 출신 국가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다문화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 갈등의 한 가운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슬람 국가들에서 온 무슬림들이 자리하고 있다. 고유한 정체성을 중시하는 이들 나라에서 일부다처제를 중심으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급속도로 인구를 늘려가고 있는 이들 이슬람 출신 이민자들은 경계의 대상이자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유럽 내에 거주하는 이슬람 출신들만 무려 3천 8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³⁾ 이들 이슬람 이민자들에 관한 것이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차이점이다.

오래전부터 이미 다양한 이유로 유럽을 비롯한 각지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다문화, 다인종 사회의 중심국가로 군림했던 프랑스, 캐나다 또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다인종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

2) 2005년도 프랑스 전 지역에서 거의 한 달에 걸쳐 무슬림 청년들이 주동이 돼서 일으켰던 ‘프랑스 방리유 사건’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 각국에 큰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유는 프랑스에서 발생했었던 이 소요사태가 단지 프랑스 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민 수용 국가들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서양 각 나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국의 이민자 실태와 환경 그리고 이민자 정책들을 다시 살펴보게 됐으며 특히 그동안 훌륭한 이민자 자녀들의 열악한 상황에 눈을 돌리게 됐다.

3) 사실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내의 이슬람 출신 이민자들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유럽 각 나라들의 정책 때문이다. 특히 인구조사를 할 때 개인의 종교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 속에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 부정적인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들에 의한 강력사건들(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국 국민들의 외국인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악화되고 있다.)과 젊은이들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제노포비아 현상’ 즉 ‘외국인 혐오증’일 것이다.⁴⁾ 이처럼 한국 사회에 진입한 외국인 이민자들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무조건 추방한다거나 이민자들의 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다른 긍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 정책 즉 ‘다문화 교육’이 될 것이다.

세계 온 나라가 하나의 도시처럼 세세하게 연결되는 ‘세계화’ 또는 ‘국제화’⁵⁾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110만이 넘는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로의 진입은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하나는 외국인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기준의 시각과 관습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히 그들 외국인들을 무난하게 한국 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다문화 교육’ 혹은 교육정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전략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일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점차로 외국인 이민자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인구구성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문화적인 사회로 들어서 있다고 볼 수

4)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 혐오증, 기피증을 말한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외국인이 자기 자신과 외모나 성격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경계하는 심리이다. 특히 이 제노포비아는 ‘다른 존재’의 대상이 누구나에 따라 경계의 심리가 나타나고 ‘다른 존재’를 배척하고 경계하는 차별적 인종주의와 깊이 연관된다.

5) 세계화와 국제화는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이 두 용어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된다. ‘세계화’가 사람, 기술, 경제, 지식, 가치, 문화 등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서로 교류되는 현상이라면 ‘국제화’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제화란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계화에 기반을 두고 이에 적합한 사회적 구조와 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민경, 2007 재인용)

있다. 외국인 이민자들이 증가한 것은 세계 각국의 필요에 따라 그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식민지 경영이나 자국민들이 꺼리는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력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이다. 이외에도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같이 국제결혼에 의한 경우도 있겠다.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해서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들어온 외국인들과 기존의 자국민들 간의 직, 간접적인 접촉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접촉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사회적, 문화적 혹은 정서적으로도 다양한 문제 혹은 부작용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다문화 교육이 중요시되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겪은 다문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다양한 국가 정책들과 교육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가장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다문화 교육정책이나 제도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가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외국인 이민자들과 기존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소통의 문제이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곧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양한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길을 걸었던 서방 선진국들인 프랑스나 미국 그리고 영국 등의 나라에서 벌어졌었던 도시 폭동이나 종교 갈등 그리고 인종 갈등 같은 이러한 문제와 부작용들이 직접적으로 표면화

됐던 사건들이었다. 이런 사회 갈등이 표면화 됐던 이유는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 새롭게 유입된 외국인 이민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한 원인들을 올바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행해왔던 것처럼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에 대한 다양성을 무시한 채 진행됐던 통합정책 혹은 동화정책은 크고 작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것이 드디어 폭발한 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프랑스 방리유 사태였던 것이다. 특히 이들 소요 사태의 핵심적인 세대가 바로 이민자2세들인 청년들이었다는 것은 프랑스 정부가 이들이민자2세들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들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동안 이들 이민자2세들을 위한 교육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프랑스도 나름대로 이민자2세들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교육정책들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민자2세들을 프랑스 사회에 제대로 통화하고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반면 그러한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성과가 제대로 열매 맺었는지에 관해서는 지난 번 프랑스 방리유 사태를 통해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⁶⁾ 이처럼 다문화 선진국이었던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를 올바로 갈등 없이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해 있는 이민자2세들을 위한 적절한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가 갖고 있던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하고 세계 공동체적 보편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6) 프랑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다문화 교육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출판되어서 프랑스 사회의 관심을 유발했는데 바로 마르틴 압 달라 프레세이으(Martin Abdallah-Pretceille)의 ‘다문화 교육 L’education interculturelle’이라는 책이 *Que sais-je?* 문고판으로 출판됐던 것이다.

적절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시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인 것이다. 특히 오랜 세월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과 단일한 공동체에서 살아왔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와 다문화 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들의 유입과 그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모든 국가들에게 정체성에 관한 문제와 크고 작은 범죄 등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사회에 익숙한 경우는 더욱 더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작금의 다문화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국가가 나서서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학교 교과과정을 개정한다던지, 혹은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들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나서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 지원과 방향성에서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실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지 기존의 사회 구성원들과 외국인들 간의 가치관이나 문화의 충돌,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회,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부분과 연관되는 복잡다단한 것이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역사가 프랑스나 미국 등 서양 선진국에 비해 길지 않고 다양한 논의와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⁷⁾ 여러 가지 정책, 즉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올

7)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2005년경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 결혼 이주여성의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원단체와 정부는 이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다문화’를 채택 하였고 2006년부터는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봄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문화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과 방안들이 계속 확산, 논의되었다.(이선옥, 2007)

바른 정립이 더욱 필요하다.⁸⁾ 이러한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 즉 다문화교육에 관한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1975년부터 이런 교육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을 위한 언어, 문화 교육정책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것은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5월에는 기존에 4개 부처에서 관리하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한 일환으로 이민, 통합, 국가정체성, 협력발전부(*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라는 독립된 하나의 정부 부처를 만들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 사르코지 정부가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교육 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이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여겼으며 다양한 정책적, 법제적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을 대하는 프랑스의 정책적 변화 혹은 법제적 변화들을 위시로 해서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와 문화, 경제, 정치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난 2005년 프랑스 방리유 소요사태에서도 봤듯이 프랑스도 외국인 이민자 문제에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앞선 다문화사회와 교육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선진적인 정책을 펴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8)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경우 자녀의 입학서류를 제출하면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입학에 관한 허가는 해당 학교의 장이 하도록 했는데 많은 학교의 장들이 그들의 입학을 원하지 않아서 그들 외국인 부모들이 당하는 차별과 소외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취학연령 대비 초등학교 입학률이 1000명 중 겨우 205명으로 매우 적은데 이것은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소외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정원, 2005)

그 나라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용이나 무비판적인 도입 혹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작금에 당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이민자들 특히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나아갈 바를 살펴보는데 있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연구방법과 내용

다문화 선진국이었던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외국인 이민자들에 의한 사회 갈등은 그동안 프랑스 정부가 추구해온 사회통합의 기본원칙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 프랑스가 추구해왔던 통합정책에 관한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다문화와 다문화 교육에 관한 것들을 역시 살펴 볼 것이고 외국인 이민자들과의 사회적 갈등의 원인에 관한 것들도 함께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갈등 해소의 한 방편인 다문화 교육과 법제에 관한 것들을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적절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문헌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법제에 대한 연구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연구의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문헌 외에 프랑스 인터넷 웹자료도 역시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정부의 대 외국인 이민자 정책과 법안을 위해서 정부 문헌 사이트인 www.vie-publique.fr, 이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이다. 또한 www.ladocumentationfrancaise.fr이나 프랑스 상원 사이트인 www.senat.fr, 프랑스 이민국인 www.immigration.gouv.fr등의 사이트도 역시 매우 유용한 사이트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제1장 서론

이들 1차 자료 외에 프랑스와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논문들이 있는데 이들 두 나라의 논문들 또한 적극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들 자료들을 통해서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와 교육에 관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적 장치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들까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관련 법제들을 통해 그들 정책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패 요인들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실상과 우리에게 필요한 다문화 교육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본 논문의 내용이자 목적이 될 것이다.

제 2 장 왜 지금 프랑스인가

제 1절 프랑스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1. 다문화 선진국, 프랑스

프랑스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외국인 이민자들을 프랑스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시키기 위한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해 온 대표적인 나라이기에 프랑스 이민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해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이른바 동화주의 모델은 이민자들인 소수집단의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며 프랑스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를 목표로 했던 정책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외국인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이 동화주의 모델이 사회적인 갈등과 위기를 촉발함으로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와 성향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협용하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모델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적 동질성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던 이민자 정책에서 민족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의 다양화까지도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 외국인 이민과 이민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연구의 대상이 된 시기는 1980년 대 이후부터이다. 특히 당시 집권당으로서 외국인 이민자 문제에 대해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던 사회당(PS)의 지원으로 이민공동체들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프랑스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곧이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프랑스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정치무대에

등장했던 게 이민자 문제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요소로 만들게 됐다. 프랑스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 즉 그동안의 이민자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오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새롭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외국인 이민자들과 기존 구성원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의 양상이 서서히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한국의 상황에서 성공한 이민자 정책도 중요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민자 정책도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연구에서 다문화 선진국이면서도 최근 들어 이민자들과의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다문화 교육과 정책들을 평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연구하고 살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러 다문화 국가들 중에서 특히 프랑스를 선택해서 연구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2. 프랑스 연구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프랑스는 누구나 알다시피 외국인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동화주의 모델을 철저히 지켜오던 나라였다. 외국인 이민자 문제를 살펴볼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사회 통합 모델과 운영 방식일 것이다. 외국인 이민자와 다문화 사회를 말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하는 모델은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이다.⁹⁾ 앞에서 말했듯이 동화주의 모델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류사회로의 완전한 흡수를 통해 그 사회에 적응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9) Parakh Bhikhu, *What is multiculturalisme?*, (김희경, 재인용, 2010, 프랑스학 53집) 국가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가 처음으로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인도의 1950년 헌법에서였다. 그러나 인도의 다문화 주의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주로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반해 다문화주의 모델의 경우 다양한 문화적 고유성과 이질성을 인정해주며 이민자 문화의 권리 보호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정책인 것이다. 또한 다문화 주의는 말 그대로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1970년대 들어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발전한 방식이다. 그 이후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 다문화 주의는 주로 교육, 그중에서도 인종적, 계층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총칭하는 말로 쓰였다. 그러므로 동화주의 모델보다는 다문화주의 모델이 소수집단인 이민자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꾀한다는 적극적인 유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다문화주의 모델에 대한 연구보다는 동화주의 모델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동화주의 모델의 정책적 장점과 단점 혹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취하고 벼려야 할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택해야 할 올바른 다문화 사회와 그에 기초한 이상적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프랑스가 다문화주의 모델이 아닌 동화주의 모델을 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프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은 하나의 집단 정체성만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프랑스를 분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체성의 등장도 절대 국가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사회통합의 원리가 ‘동화’에 기반을 두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즉 프랑스의 동화주의 정책은 프랑스의 기본적 가치 즉 프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프랑스가 그토록 중시하는 공화주의 이념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1905년도에 만들어진 정치

와 종교의 분리에 관한 법률적 원칙으로 국가는 어떠한 종교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¹⁰⁾ 이것 외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프랑스 공화국은 어떠한 종교나 개인 그 밖의 단체에 의해서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완전한 단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인 가치 때문에 프랑스는 프랑스와 다른 가치관을 가졌거나 이질적인 문화를 주장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공화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위협하는 공동체주의적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왔던 것이다.¹¹⁾

사실 프랑스를 비롯한 현재 서유럽 국가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이슬람 출신인 무슬림들의 증가에 매우 심각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더욱 더 프랑스로 하여금 동화주의 모델을 유지하도록 만든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의 무슬림들은 약 10%에 육박하는 5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빠르게 증가하는 무슬림들이 단지 프랑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대신 차지하거나 치안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로 보고 있지 않다. 이를 현실적인 문제보다 프랑스 사회와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들 외국인 이민자들 중 가장 다수에다가 가장 호전적이기까지 한 무슬림들로 인해 프랑스의 국가적 정체성이 위기를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프랑스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인종혐오, 즉 제노포비아 현상을 야기해서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0)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법(loi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Etat)

11) “양창렬은 프랑스에서의 ‘공동체주의적’이라는 표현은 일반의지가 모여지는 공적 공간과 공화국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특수의지와 문화 상대주의에 빠진 미국식 모델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양창렬, 2007,)”

이런 사회적 두려움에 힘입어 정치권에서도 이민자 정책을 강화한 다던지 혹은 극우정당(FN)¹²⁾의 출현들이 생겨나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프랑스가 줄곧 추구해왔던 동화주의 이민자 정책은 성공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처럼 문화적 다양성이나 고유성에 대한 인정보다는 일방적인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정책으로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다문화 공존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이민자들의 불만의 표출인 사회적 소요사태나 각종 권리 요구에 대한 주장이 늘어간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다문화 선진국이었던 프랑스가 주장했던 동화주의 모델의 위기를 접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 올바른 다문화 사회는 이민자들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진정한 공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프랑스의 외국인 이민자 통합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시각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을 중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 살펴본 몇 가지 이유에 의거해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외국인 이민자 정책과 그들을 포용하고 인정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에 대

12) “1972년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에 의해 창당된 FN(Front National)은 극우를 표방하는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민족전선’이라고 번역된다. 이 극우 정당의 원래 명칭은 ‘단일한 프랑스를 위한 국민전선(FNUF, Front national pour l’unité française)이다. 이 극우정당을 만들었던 장-마리 르펜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16.86%라는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당 당수였던 리오넬 조스팽(Lonel Jospin)을 따돌리고 우파였던 자크 시락(Jacque Chirac)과 함께 2차 결선투표에 까지 오르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르펜을 비롯한 극우정당은 특히 외국인 이민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힘들어진 세태를 반영하듯 국민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2012년 대선에서도 FN은 그 위세를 마음껏 발휘했고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높아진 극우정당의 인기야말로 프랑스 국민들과 프랑스 사회가 외국인 이민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동화주의를 유지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제 2 절 다문화 정책의 유형들과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다문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 통합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유형은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 즉 배제냐 수용이냐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그리고 최근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e)로 나누어진다.

1. 동화주의 정책

동화주의 정책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외국인 이민자들의 언어, 문화적 요소 등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 나라가 원하는 과정을 잘 따라오면서 사회에 통합하기를 바라는 정책이다. 프랑스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동화주의 모델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화주의 모델이 선택되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동일한 정체성의 유지와 통일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동화주의는 동화대상 집단, 즉 외국인 이민자들이 주류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에 큰 거부감 없이 잘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행하는 흡수통합 방식이다. 동화주의 정책에 따라 이민자들은 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가진 문화, 종교, 관습, 정체성 등을 버리고 주류집단이 원하는 대로 주류집단의 정체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다양한 동화주의 정책들은 이러한 문화의 전이를 가속화하게 하며 국민공동체로의 통일성과 정체성의 동일성을 시도한

다. 이때 국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언어적인 부분과 역사에 관한 부분 등 교육적인 면을 통한 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동화주의 정책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주류문화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없고 주류사회가 원하는 대로 동화돼서 주류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그들에게 국적이나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차별적 배제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동화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소수자들인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주류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동화되며 주류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동화’를 통한 외국인 이민자 통합이라는 목적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소수자들인 이민자들의 반발만 없다면 최상의 국가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수자들인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동화주의 정책은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동화의 형태와 방식이 소수자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보다는 강제와 강요적인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서서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려 하자 주류사회와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갈등이 표면적으로 폭발했던 것이 바로 지난 2005년 파리 방리유 소요사태 같은 사건이었던 것이다.

2. 차별적 배제정책

차별적 배제정책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정책의 요지는 배타적인 이주정책을 비록해서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국적 취득 등 엄격한 법의 잣대를 통하여 독일은 이민국이 아니며 국민을 형성하는 조건은 자국에서의 출생과 인종적인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이다. 차별적 배제정책은 자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프랑스의 동화주의 모델보다도 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상당히 폐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책은 또한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e)를 강조하는데 단일문화주의는 말 그대로 다문화주의와도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단일한 하나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단일한 하나의 문화를 중시한다. 국가나 민족의 강력한 동질성을 전제로 하며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정책에서는 독일의 경우 우월한 아리안 민족의 존재와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외국인 이민자들이나 소수자들의 존재와 가치는 동화와 배제를 통해서 통합시키는 것을 우선시 한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다문화주의와는 반대로 외국인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들 소수자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독 독일이 차별적 배제 정책을 채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국가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게 되고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국가를 위해 단결과 통일성 그리고 국가를 향해 모이는 응집력 등을 필요로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를 위한 단결과 응집력을 위해서는 동일한 문화와 생각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통을 중시하는 순혈주의를 중시하게 됐던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이질적인 외국인 이민자들의 문화의 허용이나 유입 등은 당연히 용인되지 않고 철저히 배척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됐던 것이다.

독일의 차별적 배제정책을 잘 볼 수 있는 예는 1960년 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도 간호사와 탄광 노동자등으로 독일에 갔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60년대 독일에서의 노동 계약조건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는 경우 독일은 법과 정부기관 그리고 국가 경찰까지 이용

해서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철저히 차별, 배제하는 강력한 이민자 정책을 폈다. 법을 통해서는 합법적인 직업이나 거주, 노동시간 등에서 철저한 통제를 했었고 정부기관을 통해서는 이민자들의 영구정착을 제도적으로 막았으며 이민자들의 추방만을 전담하는 경찰까지 만들 정도였다.

외국인 이민자들을 향한 이런 차별과 배제정책은 사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선거권 같은 경우 어릴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외국에서 출생한 독일인이더라도 다시 독일로 귀국하면 설사 독일어나 독일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귀국 즉시 독일 국민으로 간주해서 모든 권리와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외국인 이민자의 경우 비록 독일에서 출생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외국인으로 간주해서 파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차별과 배제는 지속돼서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과 독일 학생들을 분리해서 학급을 편성하는 일도 흔하다. 프랑스와는 달리 수업의 질이나 학습조건에 원천적인 차별을 두어 외국인 자녀들이 낮은 수준의 학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 이민자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떨어지고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 최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가 돼서 외국인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흡사 이데올로기 같은 정책이 바로 차별적 배제정책인 것이다.

3.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가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지녔던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가진 외국인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잘 살기위한 생각들이 제기되면서 이 용

어에 관한 논의들이 나오게 됐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에 대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정책이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자 국민통합을 위한 이념의 한 방편으로서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이다.¹³⁾ 이때 학문적, 정책적으로 부상한 다문화주의는 국가나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거시적인 차원보다는 사회내의 소외 계층이나 마이너리티 혹은 세대 간 갈등이나 성 역할의 차이 등 미시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므로 초창기 다문화주의는 어떤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사회 운동이라기보다는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었다. 다문화주의는 어떠한 영역의 시작에서 보느냐에 따라 철학으로, 정치적 지향으로 때로는 규범적 선호로도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¹⁴⁾ 광의의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는 방식내지는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학문적, 정책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오늘날 또다시 사회통합 혹은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으로 다문화 담론이 등장한 것은 외국인 이민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사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일

13)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부터였다. 카톨릭을 믿는 프랑스계 퀘벡 사람들이 당시 주류였던 영국 문화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기를 원했다. 즉 오늘날 다문화의 쟁점이 되는 시민권이나 경제적 권리에서의 배제의 문제인 동화주의의 위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정체성 모델’이 다문화주의 논쟁의 기원이 된 것이다. (손철성 2008: 7)

14)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광의의 다문화주의라 전제한다면 철학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차이의 철학’에 근간을 두고 서구적 합리성과 이성을 수단으로 특정문화에 대한 타 문화의 지배를 부정하는데 있고 정치적 지향으로서 다문화주의는 ‘차이의 정치학’ 또는 ‘정체성의 정치’로 구현된다. (원숙연, 2008: 526)

반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미국에서는 문화다양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올리에 Ollier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흔히 소수문화의 인정, 문화 다원주의, 다양한 문화의 소통, 공동체주의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이용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문화주의를 자신이 가진 정치성이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한다.¹⁵⁾ 이처럼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다. 동화주의 모델이 소수집단이 자신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집단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라면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버리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긴다.¹⁶⁾

이처럼 동화주의보다 다문화주의에 대해 동, 서양 모두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사회로 흡수하는 방식은 동화주의 정책을 통한 수용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동화주의 모델은 많은 이민자들의 반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결국 그동안 시행해 왔던 동화를 통한 통합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 다문화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심화는 이민자들을 통합하는 원리로서 동화주의가 아닌 다문화주의가 가장 발전한 형태의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앞에서 말했듯이 소수집단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버리거나 완전한 참여를 제한받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모델에서는 각각의 인종, 민족의 전통적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공적원조를 한다. 또한 인종차별금지 혹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도입하여 각 집단 내에 불만이 쌓이는 것을 예방

15) Fabien Ollier, *L'idéologie multiculturaliste en France*, L'Harmattan, 2004, p. 7.

16) 한승준, 『동화주의 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한국행정학회, 2008, p. 107.

하기 위한 정책을 취한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해서 국민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려는 이데올로기이며 구체적인 정책원리인 것이다.¹⁷⁾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목표는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각각 다른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하에서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주류문화에 동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출신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서는 비록 외국인 이민자라 하더라도 각 개인의 자유와 다양한 의사표현 등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 요구와 권리의 행사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이처럼 다문화주의 모델은 동화주의 모델을 뛰어넘는 가장 이상적인 외국인 이민자 정책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짧은 시기동안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 이민자 집단을 통합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¹⁸⁾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다문화주의가 모두가 인정하는 확실한 긍정의 의미, 사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학자들은 우선 다문화주의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¹⁹⁾ 즉 명확하게 단 하나의 단순한 의미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의 모호함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유력 사전에서도 발견된다. 뽀띠 라루스Petit Larousse사전에는 다문화주의가 하나는 한 사회와 한 국가안의 여러 가지 문화의 공존으로 다른 하나는 인종

17) 조정남,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2007, p. 30

18) 박세훈,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 (1)』, 국토연구원, 2009, p. 28

19) Meidad Bénichou, Le multiculturalisme, Bréal, 2006, p. 10.

적 소수자들에 대한 주류계층의 문화적 혜계모니를 문제 삼고 이러한 소수자들의 완전한 인정을 옹호하는 미국의 사조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장 완벽한 외국인 이민자 정책으로 여겨지는 다문화주의가 프랑스에서는 조금은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모델은 동화주의가 아닌 다문화주의가 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개인과 소수자들인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 모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서로 상이한 특수한 민족의 조상임을 인정하고 국민 개개인 모두가 각각 다른 민족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갖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186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로 대대로 강조되어온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온 공화주의적 전통 속에서 프랑스의 다문화주의 수용이 온전하기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모호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프랑스의 경우 더욱 더 국가가 나서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문화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게 되고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이 점점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제3장 프랑스 이민자 정책의 역사와 배경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선택과 정책들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 사항으로 프랑스 외국인 이민자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그에 관련된 주요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 할 일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국가적인 철학이나 사회적 배경에 기반을 둔 외국인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에 해당하는 몇 가지 외국인 이민자들을 대하는 국가들의 정책들을 살펴봤는데(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다문화주의) 그렇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위의 세 모델 중 어느 모델을 그동안 국가적으로 취해왔는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통합하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동화주의 모델에 가까웠으나 최근의 외국인들의 유입과 증가추세로 볼 때 큰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 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적부여 원칙과 차별적 배제 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통합정책이 장기적으로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서구 대부분의 나라들도 동화주의나 차별적 배제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²⁰⁾ 다문화주의를 그동안 채택했었던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외국인들의 이민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20) 황정미,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 한국여성정책원, 2007, p.24

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면,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동질적인 문화와 민족을 가진 전통적인 국민국가였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보다는 동화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대대로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침입과 침략을 겪어내고 단일한 민족과 문화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더욱 더 다문화가 아닌 동화주의를 가깝게 여겼던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했었던 프랑스의 경우는 국민적인 기질이나 중앙집권적인 정치, 단일한 민족구성 등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지금 프랑스의 외국인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그동안 추진해왔었던 동화주의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제 1 절 프랑스의 네 단계 이민역사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 가장 오랜 이민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프랑스인데 크게 ‘정치이민’과 ‘경제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이민은 프랑스대혁명이후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이민이고, 경제이민은 산업혁명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른 나라들, 특히 식민지로부터 유입된 이민을 말한다. 특히 프랑스는 19세기 중반, 정체되어있던 인구의 증가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변 국가 등의 이탈리아나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대규모 이민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됐던 프랑스의 경제이민은

21)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8, 제 42권, p. 465

20세기 접어들어 유럽뿐 아니라 북아프리카나 중국, 인도차이나 등에서 오는 외국인 이민자들로까지 확대되었다. 나중에는 러시아나 체코, 폴란드 등의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들에서 프랑스로 오는 정치인들의 망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치이민도 늘어났는데 1930년대 초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프랑스의 일자리가 줄어들 때까지 이런 정치이민과 경제이민은 계속 증가했다. 프랑스의 이민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경제이민은 보통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어져왔다.

1. 첫째 단계

첫째 단계는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로 한 마디로 이 시기의 이민을 정의한다면 외국인 이민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증가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 이민의 특이한 것은 프랑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외국인 이민이 시작됐으며 특히 프랑스의 산업화 발달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단계의 외국인 이민은 프랑스의 정체됐던 인구 숫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근대화 시대를 거쳐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의 길로 접어든 프랑스 입장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공장에서 일할 많은 젊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했다. 특히 프랑스 북부지역에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일손이 필요했지만 주변국들의 인구 증가에 비해서 프랑스 인구는 거의 늘지 않았다.²²⁾ 이러한 인구 숫자의 정체는 곧 필요한 일손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추진됐던 것

22) 19세기 말과 20세기가 시작되는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인구가 2-3배 증가했던 데에 비해 프랑스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아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지게 됐다. 그러자 프랑스는 주변 국가들인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에게서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게 됐다. 이들 이민자들은 자국에서의 가난한 삶에 염증을 느껴 프랑스로 들어온 사람들로 주로 프랑스 북부지방의 광산과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이 바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젊은이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었다.

이 당시는 프랑스가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의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프랑스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었다.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의 공장에서 프랑스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외국인 이민자들은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매우 간소한 절차만으로도 프랑스 체류 혜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자 유치노력과 함께 자국에서 일자리 부족으로 고생하던 주변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대거 프랑스로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프랑스 주변 유럽 국가 출신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졌기에 프랑스로 이민을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 시기에 프랑스에 거주하던 외국인 이민자들의 수가 대략 110만 명 정도였는데 이것은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2.6%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들이 당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초창기 프랑스 경제이민의 대부분을 이루게 됐던 것이다.²³⁾

프랑스는 이웃 국가들에서 많은 젊은 인력들을 받아들여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던 것에서 한 빌 더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인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도 끊임없이 젊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으며 아예 1924년 들어서는 이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일종의 회사를 통해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경제이민의 첫 번째 단계이자 외국인 이민자 구성원들이었고 유독 프랑스 주변 가까운 이웃나라 출신들의 젊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대거 프랑스로 이주해 온 이유였다.

23) Debbash, 김정곤 역, 『프랑스 사회와 문화 I: 프랑스 국민, 사회구조, 삶의 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 76

2. 둘째 단계

둘째 단계는 본격적인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프랑스 이민 정책이다. 첫째 단계가 산업화의 발전과 인구 정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프랑스가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계기였었다면 이 단계의 이민자 정책은 전쟁으로 인한 이민정책이었다. 프랑스는 이 시기 들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됐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프랑스 자체적으로 충당 할 수가 없었다. 한창 전쟁이 활발하던 당시에는 필요한 무기 제작과 전쟁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전쟁 종전 후에는 무너진 국가 재건 사업을 위해서 역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런 국가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식민지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로서 프랑스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북아프리카 나라들 특히 알제리 출신 젊은이들을 대거 수용하게 됐다.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던 알제리와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프랑스의 전쟁에 도움을 주게 되고 나중에 이들에게는 프랑스의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들 이슬람 종교를 가진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정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 바로 둘째 단계 이민의 특징이다. 지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슬람 출신 이민자들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 이들 이슬람들로 인한 유럽 각국의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 이슬람들이 프랑스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프랑스 정부가 원했던 일 이기도 했다.²⁴⁾

24) 장명학, 『세계화와 인종갈등: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제노포비아와 그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국제문화연구, 2006, pp. 181-182

3. 셋째 단계

셋째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 대 경제공황을 겪은 후인 1974년까지의 시기를 들 수 있는데 이 시기는 국가이민국의 창립과 함께 프랑스의 이민역사를 위해서는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 들어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력 부족 타개를 위해서 외국인 이민이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프랑스는 약 60여만 명의 젊은이들을 잃게 됨으로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므로 프랑스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부족해진 인구의 증가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이후 계속되었고 1970년 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이 당시 이민의 특징을 들자면 그동안의 이민이 노동력을 갖춘 젊은이들 개인에 의한 이민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젊은이 본인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프랑스로의 이민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역시 프랑스 정부가 양차 세계대전으로 감소해서 부족한 인구와 노동력 증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취했던 것이었다. 또 하나는 그동안의 외국인 이민자들은 해당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됐고 이를 외국인들에게 단순한 체류증에 해당하는 허가를 내줬는데 이 시기 들어 단순 체류증이 1년, 3년 그리고 10년 장기 체류증의 형태로 세분화된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이런 적극적인 이민정책에 힘입어 1945년 10월 들어 국적취득이 상당히 자유로워졌고 1958년 1월 들어 시행되기 시작한 ‘로마조약’에 의거해서 1972년 가지 입국과 탈식민지화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1960년대 들어 프랑스의 이민은 아예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협정을 통해 대량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1961년부터 196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프랑스는 주변 나라들인 스페인, 포르투칼, 그리고 북아프리카 국가들인 튜

니지와 모로코 그리고 알제리와의 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의 영향으로 대규모 외국인 이민자가 밀려들게 된 것이다. 프랑스는 1961년 프랑스-스페인 이민협정을 맺었고, 2년 후인 1963년에는 프랑스-포르투칼 이민협정을 맺었으며 같은 해에 프랑스-모로코와 프랑스 튜니지 이민협정을 맺게 됐다. 프랑스와 알제리간의 이민협정은 1968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급격한 프랑스 이민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게 됐다.

이 대규모 이민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사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북아프리카 출신 이슬람 사람들의 프랑스 유입이었다. 특히 마그레브 지역으로부터 이슬람 젊은이들이 대거 프랑스로 들어오면서 프랑스인들의 불만과 걱정은 점차로 커지게 된다. 실제로 이들 북아프리카 출신 이슬람 젊은이들은 프랑스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처럼 1972년부터 1973년에 걸쳐 프랑스의 주요 대도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외국인 이민자들이 이때 시위를 벌이게 됐던 것은 프랑스에서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점차로 구하기가 어려워졌던 게 하나의 원인이었다. 국가적인 필요성(국가재건, 노동력 보충)에 의해서 비록 이들 많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프랑스로 불러들였지만 1970년대 들어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사태가 촉발되자 프랑스도 예외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더 이상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이민자들의 일자리, 즉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 정부는 아예 1974년 들자 그동안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던 외국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런 경제적 파고를 겪은 프랑스의 이민자 유입정책은 197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이민자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시기의 이민정책이다.

4. 넷째 단계

넷째 단계의 프랑스 이민자 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동안의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이민자 규제정책을 유지하는 1974년 이후의 시기이다. 이러한 이민자 규제정책은 특히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탱이 새로운 이민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외국인들의 프랑스 입국과 출국 그리고 프랑스 체류를 엄격하게 감시하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이 시기의 이민정책에 의한 새로운 현상은 불법이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이민자들을 규제하고 입국을 불허하다보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선진국인 프랑스로 오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됐고 1980년대 들어서는 이들 외국인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좌파 정치인들과 종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주동이 되어서 인종차별과 이민 혐가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자유로운 노동의 자유 등을 내걸고 웰기하는 시위들이 많아지게 됐던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은 급기야 1985년 들면서 외국인 이민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좌파와 우파에 의한 정치문제로 가지 발전하게 되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생각도 이들 정치인들에 따라 우파와 좌파를 지지하는 두 가지 다른 생각으로 표출되게 됐다. 우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테러나 불법이민 등으로 프랑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소지가 많으니 아예 법률을 제정해서 이들 외국인 이민자들을 규제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좌파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규제보다는 프랑스보다 여리모로 부족한 나라 출신에서 일하기 위해 프랑스에 온 사람들로 이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 프랑스는 좌파 사회당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외국인 이민자들을 불쌍한 사람들이자 프랑스를 위해 온 사람들로 받아들이자는 좌파

의 생각이 프랑스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결국 3년 후인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좌파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게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90년대 들어서자 그동안 불법이민자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합법적인 서류와 지위를 만들어주자는 요구들이 등장하게 됐고 결국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져서 1999년부터는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단계적인 합법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합법화의 추진이 결코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바라던 대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만 시도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프랑스 정부의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합법화 정책의 배경에는 물론 인권적인 측면도 고려됐지만 그 바탕에는 프랑스의 경제성장과 세금확보라는 실리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2000년 대 접어들면서 외국인 이민자 문제는 비단 프랑스의 어려움 만이 아니었다. 다른 주변 유럽 국가들도 프랑스처럼 동일한 외국인 이민자들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2003년 들어 외국인 이민과 가족구성법에 관한 권리를 채택한 보고서를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체류증과 프랑스에서의 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 등 이민자들에게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규제를 명시화 한 내용이었다. 이처럼 2000년 대 들어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해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의미하는 것은 프랑스 이민자 정책이 본격적인 통합정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4차례의 이민자 정책을 겪으면서 프랑스가 따르고 있는 가장 최근의 정책의 바탕이 되는 이민자 정책은 2003년 11월 만들어진 ‘불법이민 관련법’에서부터 2006년 7월 만들어진 ‘이민과 통합 관련법’에 따른 정책이다.

2003년의 이 법은 흔히 ‘사르코지 법’으로 불리는 법안인데 간략히 얘기하면 총 5장 95조로 구성됐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불법이민자를 근절시키고 반대로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정착을

제 3 장 프랑스 이민자 정책의 역사와 배경

돕겠다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민자 숫자의 통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민자들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입국증명서를 강화한다든지 단기 체류를 위한서류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들이 이 법안의 기본 생각이다. 사르코지와 그와 관련된 이민자 법안들은 본고의 후반부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제 4 장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

제 1 절 일반적인 다문화 교육

그동안 우리는 앞장에서 외국인 이주민을 수용, 통합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모델로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좀 더 올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이민자 정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이민자에 관한 역사와 배경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이민자 정책은 방법론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비록 다르게 구분하지만 두 정책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그 나라의 주류사회에 수월하게 적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하든 다문화주의 모델을 채택하든 서로 다른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주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외국인 이주민들의 개인적 사회화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다문화사회에서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다문화 교육이 될 것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함께 다문화 교육이 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1.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정의

특히 프랑스 교육체제에서 다문화의 문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먼저 프랑스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외국 출신의 이민자들을 순조롭게 통화하고 프랑스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용되어 왔다. 물론 그러한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결실에 대한 의구심과 자성의 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논할 때마다 그 교육의 의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이 정말 외국인들과 그들의 ‘문화 다양성 *diversité culturelle*’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함인지, 아니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통합을 위한 하나의 도구인지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복잡다단한 다문화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적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렇기에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이 날로 중요해지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문화 교육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권리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 교육은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1960년 대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 차별에 대한 시민권 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새롭게 등장했다. 이처럼 다문화 교육은 학교 내의 인종차별주의와 특히 관련이 깊었으나 이후 시간을 두고 학교와 외국인뿐 아니라 장애인,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소외되거나 억압받았던 계층의 인권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 그 시초였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들이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민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외국인 이민자들을 미국민으로 통합시켜서 국가적 통합을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것이 다문화 교육의 시작이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생긴 다문화라는 용어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시킨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의 정의이자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이 문화간 교육이나 타문화 교육 혹은 이문화 교육 등의 당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미로 다문화 교육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 마디 말로 단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다문화 교육을 정의한다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를 준비시키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타문화와 인종, 특히 소수인종과 소수집단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가져 함께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고 다문화 교육이 필요로 하는 정의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다문화 교육이 갖는 목적과 정의에 맞게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사람들이 민족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인간에 대한 평등함을 인지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며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잘 이해시키고 협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다문화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

다문화 교육의 올바른 의미와 그 시초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다문화 교육이 이토록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문화 교육이 정말 필요한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단일문화를 중시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아이슬란드와 더불어 아직까지도 단일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드문 나라이다.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같은 풋줄과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인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특히 다문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1990년 대 들어 급속도로 진행된 외국인 이주민

문제에 맞서 정책실행 및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경험하고 있기에 더욱 더 다문화와 다인종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다문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전 세계에서 화교가 성공하지 못하고 차이나타운이 빛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엄연한 시각이다. 소수문화 주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제도적 배려의 부족함과 인색함은 그들 소수자들인 외국인 이민자들을 재서열화하고 재인종화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²⁵⁾ 특히 최근 들어 빈번하게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강력 범죄와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불만들이 팽배해지면서 더욱 더 외국인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해진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소수문화 주체들, 즉 외국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인정과 관용의 정도는 정부나 사회 모두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거역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로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현상과 현실에 맞는 다문화 정책과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교육에 앞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소수 약자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될 것이다. 즉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수용하면서 자아와 자국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되어 다문화

25) 외국인 고급 인력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 에스닉 코리안과 일반적인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합법 체류자와 미등록 체류자 등으로 이민자들의 내부는 위계적으로 재범주화 될 수 있다. 재인종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간지의 광고를 참고할 수 있다. “베트남 신부의 장점: 혈통이 우리와 비슷하다(몽고 반점 있음), 일부종사를 철칙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긴다. 중국이나 필리핀 여성과 달리 체취가 좋다...” 한겨례 신문, 2006, 5, 1, 이경미 재인용)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의 능력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제 2 절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의 현실: 통합정책

1. 프랑스가 추구하는 주요가치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의 핵심을 한 마디로 말하면 ‘통합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통합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 혹은 다양한 문화정책들을 논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프랑스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것에 기초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그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추구하는 중요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해서 우선적으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프랑스가 줄곧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유지해온 공화국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대혁명 후 제헌의회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선언문 1조에서부터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생존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에 근거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선언문 1조야말로 프랑스 공화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프랑스 공화국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가치를 포함하는 ‘자유롭고 모든 것에 평등한 시민’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권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 ‘자유와 평등’을 중시해 온 프랑

스적인 가치관은 인종이나 종교적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차별을 모든 영역에서 거론하는 것을 당연히 금기시하게 된다.

이러한 바탕에서 프랑스는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기존의 프랑스인들과 통합하고 프랑스 사회에 순조롭게 동화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이상으로 삼는다. 이런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관에 따라 현재까지 외국인 이민자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서로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이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고양함이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닮아가게 하며 하나로 뭉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프랑스가 추구하는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방향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출신의 외국인들의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나눠질 수 없는 프랑스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 인정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프랑스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프랑스 사회 통합의 도구로서 활용하려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가 중시해온 가치관을 전제로 한 후 좀 더 구체적으로 프랑스가 추구해왔던 통합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2. 프랑스의 통합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프랑스 사회는 ‘이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활동기금 Fonds d'action social pour les travailleurs immigrés et leurs familles, FAS을 중심으로 알제리 이민자들의 통합을 꾀하고 있었다. 특히 소수자들인 외국인 이민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인권 단체들은 프랑스의 경제성장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주택이나 교육, 인권 문제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1980년 대 초반까지 이런 형태의 사회적 갈등은 계속 이어졌다.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로카르Rocard 총리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민자 공동체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아래 통합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1989년 12월 만들어진 ‘고등통합위원회’로서 이 위원회를 통해 이들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이 새로운 위원회의 등장으로 인해 우선 ‘통합intégration’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정의되기에 이른다. 이민자들의 통합은 이들 소수 약자들을 프랑스 사회 안으로 흡수해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이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즉 프랑스가 말하는 통합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결집하고 집중시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다. 즉 정치와 종교의 분리,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외국인 이민자들만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됐다. 이를 위해 고등종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해서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했다.

고등통합위원회의 제안

첫째,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민족관습을 금한다.

(일부다처제, 강제적 다산과 낙태, 음핵 제거)

둘째, 프랑스에서 반드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에게는 프랑스어가 제1언어가 된다.

출신국의 언어는 외국어로 간주한다.

넷째, 종교분리 원칙에 의거해서 공립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금한다.(히잡 착용 금지)

이상 고등통합위원회는 이러한 네 가지 지침을 권고하면서 통합의 절차를 잘 지킬 경우 프랑스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됨은 물론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서 이민자들에게 사회 보장 수당이나 주택 보조금 같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것은 충분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고등통합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는 반대로 체류를 합법적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이민자들은 본국으로 귀국을 하지 않는 한 불법외국인인 ‘상파피에 Sans-papiers’가 돼서 위원회가 제시한 통합대상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당시 총리였던 드 빌팽 총리는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프랑스 경제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민에 관한 실행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인권이나 권리가 아닌 프랑스 경제에 이득이 될 만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5개 안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강화, 불법 결혼이민 차단, 이민 전담 경찰 창설, 불법노동 단속 위한 사법경찰 창설, 그리고 유럽협력강화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에 당시 내무부를 중심으로 ‘수용적 이민(immigration subie)’의 대상축소와 ‘선별적 이민(immigration choisie)’의 대상증가라는 두 가지 핵심 방향이 정해지게 됐다. 이런 당시 정부의 강경한 이민자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국적과 인종에 따라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에 모순되며 가족 재결합과 비호권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강경파 내무부 장관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는 오히려 외국인 이민자 추방 조치를 더 강화해서 ‘상파피에(불법 체류자)’의 증가를 막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것이 당시 통합정책을 추진하던 프랑스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기도 했다.

1980년 대 이후 2, 3년을 단위로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프랑스 외국인 이민 정책의 보수화가 감시와 처벌의 틀을 구체화해 통합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 프랑스 사회는 공

리주의에 기포한 또 다른 양상의 이민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프랑스 이민 정책의 주요 방향은 ‘통합’정책으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과는 차이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 대혁명이래 비록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국민들의 출신지를 묻거나 하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 했다. 이것은 이민자들의 출신지를 공표하고 공식적 자료에서 이용하고 있는 영, 미권 나라들하고는 다른 프랑스만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취했었던 정책은 철저히 ‘배제적 통합’이었으며 이러한 프랑스의 차별에 근거한 통합정책은 결국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2005년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었던 파리 ‘방리유 사태’와 2년 후인 2007년에 발생했었던 ‘빌리에르벨(Villiers-le-Bel)’사태였던 것이다.

2005년의 파리 방리유 사태에 비해 덜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2007년의 이 사태도 파리 북쪽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으로 프랑스 이민자 정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를 소요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프랑스 정부가 택했었던 통합을 위한 정책이 큰 한계에 직면했음이 드러났다. 프랑스 외국인 이주민 정책의 한계와 어려움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이들 2005년과 2007년의 불행했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프랑스 통합정책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 3 절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한계와 어려움

1.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

우리에게 흔히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로 알려졌던 사건의 시발점은 파리 북쪽에 위치한 클리쉬 수 부아(Cliche-sous-Bois)라는 곳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이곳은 파리 북쪽의 센 생 드니(Seine-Saint-Denis) 도에 있는 작은 도시로서 프랑스 이민자 출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중 하나였다. 이곳에 살던 이민자 가정 출신의 10대 청소년들이 2005 년 10월27일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고압 전선에 감전되면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던 사건이었다. 경찰들의 차별적인 불심 검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그리고 경찰들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쳤던 10대 이주민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그동안 프랑스 사회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던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의 공감을 분노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프랑스가 추구해왔던 외국인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지게 됐던 것이다. 외국인 이민자들이 주로 해당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분노라는 측면과 그동안 프랑스가 심혈을 기울여왔던 외국인 이민자 정책의 한계에 대한 측면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이다. 프랑스는 그동안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유지해왔고 그런 정책들이 효과적이라고 여겼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프랑스의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이번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는 프랑스로서는 또 다른 이미지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던 사건이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누리고 있던 프랑스는 ‘톨레랑스(관용)’와 ‘인권의 대명사’라는 공식이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개념이 시작된 나라로서 약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톨레랑스’의 원조로서 이에 대한 자부심이 컸었는데 이번 외국인 이민자들의 집단 저항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것이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프랑스는 곧 톨레랑스 국가라는 이 명예로운 타이틀은 프랑스에게 약자들의 인권

을 중시하고 특히 외국인 이민자들이나 정치적 망명자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과 억압 없는 사회라는 인식을 가져다주는 좋은 무기였는데 이런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적신호가 켜진 사건이 바로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였던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프랑스가 약자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톨레랑스 국가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95년 이후부터였다.²⁶⁾

이들 이민자 출신 청소년의 죽음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프랑스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수많은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의 공분을 이끌어내면서 심각한 사건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파리를 비롯한 파리 근교에서 약 3주에 걸쳐 발생했던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과 경찰의 충돌로 만 여대 이상의 차량이 불에 탔고 3천여 명 이상의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다쳤으며 시위 진압에 나섰던 수백 명의 경찰도 부상을 입었던 것이다. 이들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의 소요와 반발이 점차 거세지자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사르코지는 야간 통행 금지령과 비상사태법을 프랑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동시키게 됐다. 비상사태법이 무엇인가. ‘비상사태법’은 과거 알제리 사람들의 데모와 소요를 예상해서 만들었던 법이었는데 알제리와의 전쟁 상황에서 만들어진 매우 특별했던 법이었다. 이 법은 불심검문과 정부에 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가택연금 그리고 정부에 적대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으로서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나 발효될 성질의 법이었는데 외국인 이민자들의 소요가 점차로 심각해지자 급기야 이 법을 발동했던 것이다. 이것만 봐도 당시 프랑스 정부가

26) 우리나라에서 프랑스가 톨레랑스 국가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망명객으로서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살았던 홍세화씨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통해서이다. 1995년 창작과비평사를 통해 출판된 이 책을 통해서 톨레랑스가 무엇인지, 프랑스가 왜 톨레랑스 국가의 상징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고 이 저서 덕분에 프랑스는 외국인 이민자들이나 정치적 망명객들에게는 흡사 천국같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

파리 방리유 사태를 얼마나 심각한 사건으로 여겼는지를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²⁷⁾

사실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는 전통적인 프랑스 시위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프랑스의 시위문화는 과격한 폭력사태보다는 언론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시위대가 요구하는 구호를 적은 피켓들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사태는 기존의 시위와는 전혀 다른 양상, 즉 과격할 정도로 심한 폭력사태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시위와는 너무 다르게 비폭력적인 거리 행진이나 시위대들의 구호외침 같은 일종의 준비과정 없이 곧바로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과 경찰로 대표되는 정부와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삽시간에 벌어졌다는 것도 프랑스 정부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가 이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프랑스의 시위와는 다르게 전개 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번 파리 방리유 사태를 이처럼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었던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4가지 주요 원인을 꼽을 수 있다.

파리 방리유 사태의 4가지 주요 원인

- 1. 외국인 이민자들의 분노:**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의 그동안 쌓였던 억압과 차별에 대한 것이다. 특히 파리 북쪽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북아프리카 출신 젊은이들의 사회적 억압에 대한 분노가 일거에 폭발한 것이다.
- 2. 시위 지도부의 부재:** 이번 사태가 이처럼 순식간에 겉잡을 수 없이 빠르게 과격한 폭력을 동반한 사태로 번지게 된 것은 시위를 조직하고 이끌어 갈 지도부가 없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프랑스의 대부분의 시위에는 그들을 모으고 작전

27) 염한진, 『프랑스 이민자의 봉기, 그 원인은?』, 인권하루소식, 2395호, 2005년,

을 지시 하고 시위구호를 만드는 등 시위 지도부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 지도부가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번 파리 방리유 사태에서는 특정한 지도부가 없이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모였다 흘어지는 흡사 게릴라전을 방불케 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과격 부랑아들의 개입: 이번 파리 방리유 사태가 이처럼 과격한 폭력 양상으로 번지고 이를 진압하는 경찰들도 과격한 진압을 하면서 흡사 내란을 연상할 정도의 사건이 된 데는 과격한 부랑아와 일종의 불량배들의 개입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평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던 이들 과격 부랑아들은 이번 사태, 즉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과 파리 경찰의 직접적인 충돌을 이용해서 이번 시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리의 자동차들을 쓰러뜨리고 상점들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등 시위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들 일부 과격 부랑아들의 무정부적인 폭력적인 행동들은 고스란히 외국인 이민자들의 전체 행동인양 언론을 비롯한 대중매체에 비추어졌고 이를 보는 프랑스 국민들과 정부는 이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더욱 강경한 진압을 하게 되면서 폭력 사태는 더욱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됐던 것이다. 특히 이들 시위대에 편승해서 일부 과격 부랑아들이 저지르는 폭력적인 행태에 대한 책임은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두려움을 깨우면서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²⁸⁾
4. 언론의 자극에 대한 반발: 위의 3가지 주요 원인 외에도 한 가지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식에 대한 일종의 반발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파리 방리유 사태를 통해서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

28) 이학수, 『자유주의와 프랑스의 청년들』, 역사와 문화, 2006, pp. 95-100

들이나 젊은이들은 프랑스 정부와 일부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언론에 의해 사회불만세력 혹은 테러조직으로까지 낙인찍히게 됐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데 있어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같은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보도를 하곤 했다. 프랑스의 외국인 이민자들의 어려운 현실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근본적이고 문제의 핵심을 진단하기 보다는 이들이 보여주는 과격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흡사 이들 외국인 이민자들을 파리를 전복시키려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는데 이런 일부 언론에 의한 반발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심기를 자극해서 더 과격한 양상으로 번지게 했다는 것이다.²⁹⁾

이처럼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지게 됐던 4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겪은 후 그동안 프랑스 정부가 취해 왔었던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몇 가지 대책들을 제시하게 됐다.

프랑스 정부가 급히 내놓은 이들 대책들은 당근과 채찍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우선 일종의 당근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3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3가지 정책(일종의 당근책)

첫째, 이민자 가정 출신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사회통합 균등처>를 창설한다는 것이었다.

29)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도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는데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결과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이강국의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2005), 손영우의 『도시 소요와 기로에 선 프랑스 신자유주의』(2005), 박단의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2006), 장진범의 『프랑스 소요사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2005), 역시 손영우의 『분노의 불꽃 부른 프랑스 파시즘』(2005)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또 하나는 교육여건이 특히 열악하고 부족한 지역을 선정해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ZEP제도를 꼽을 수 있다.

셋째, 또 다른 정책으로는 그동안은 16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만 부여 했었던 직업교육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16세는 물론이고 14세의 어린 청소년들도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런 3가지 정책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일종의 당근책이었던 것이다.

파리 방리유 사태 후에 프랑스 정부는 당근책 외에 채찍에 해당하는 강경책도 함께 내놓았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강화된 이민통제정책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장결혼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것과 무슬림들에게는 흔한 현상인 일부다처제의 부정,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 유학생들에 대한 학교 입학조건 강화 등이다. 이처럼 채찍에 해당하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 가난하고 프랑스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까다롭게 검사해서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었다.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를 몰고 온 매우 특별했던 사건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프랑스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생각, 즉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톨레랑스)을 철회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로서는 매우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행하는 과격한 폭력행위를 본 프랑스 국민들은 처음으로 시위와 데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들에 의한 치안 불안을 염려하게 됐으며 그동안 외국인 이민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냈던 심정적 지지를 거두게 됐던 것이다. 물론 대권가도를 염두에 둔 야심 많은 정치인이었던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자신의 입지강화와 인기 상승을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들에게 과격하게 진압을 해서 외국인 이민자들이 크게 반발하

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파리 방리유 사태는 그동안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눈길을 보냈었던 대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외국인 이민자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일이었던 것이다.³⁰⁾

2. 빌리에르벨(Villiers-le-Bel) 사태

빌리에르벨 사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에는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2005년 충격적인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의 반발을 경험한 프랑스 정부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당근책을 준비해서 시도해오고 있었는데 그 2년 후 또 다른 심각한 사태를 경험하자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는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있다가 맞닥트린 사건이었지만 이번 2007년 빌리에르벨 사건은 여러 다양한 이민자 대책 시행 와중에 터진 사건이었기에 그 당혹감이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2007년 11월 25일 파리에서 북쪽으로 약 20킬로 떨어진 발두와즈(Val-d'Oise)도의 작은 마을인 빌리에르벨에서 촉발된 사건이었다. 이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민자 가정출신의 라라미(Larami)와 무신(Moushin)이라는 15세 십대 소년 2명이 경찰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면서 시작된 소요사태가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이 외국인 이민자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경찰의 조금은 안이한 대응도 한 몫을 했다. 사고 목격자들은 오토바이와 경찰차의 충돌이후 경찰이 소년들을 그대로 길가에 방치해서 죽었다고 주장했고 반면 경찰은 책임을 소년들에게 전가 하는듯한 태도

30)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 연구 14호, 2006, p. 252.

를 보였었다. 소년들이 헬멧도 쓰지 않았고 더구나 교통신호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어디서나흔히 볼 수 있었던 이 교통사고는 파리 교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 출신들의 공분을 사게 되면서 매우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했던 것이다. 사건 초기 르 몽드(*Le Monde*)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지만³¹⁾ 파리 시민들을 비롯한 프랑스 국민들은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소요사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프랑스 시민들이 이번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를 이처럼 국가를 흔들 만큼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인 것은 이번 사태가 빌리에르벨 근처 파리 교외 북쪽에서 시작돼서 남쪽 도시인 툴루즈까지 번진 것도 이유였지만 그것보다는 이번 사태에서는 각목과 돌멩이, 화염병은 물론이고 휘발유로 만든 사제폭발물과 사냥용 산탄총까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국민들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고 노동자들의 집단 파업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때조차도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주차돼있는 자동차와 버스를 쓰러트리고 방화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들을 향해 화염병과 사제폭발물 그리고 산탄총까지 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과 더불어 두려움까지 갖게 된 것이다. 실제 당시 경찰 발표도 이번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는 2005년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폭력적이며 폭동자들이 흡사 도시게릴라(*guérilla urbaine*) 같았다고 할 정도였다. 이번 빌리에르벨 사태를 맞이해서 프랑스 정부에서도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

31) *Le Monde*, 2007, 11, 28, “Les émeutes de Villiers-le-Bel de 2007 ne ressemblent pas à celles de 2005”

했는데 이 도시 일대에 1000여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의 배치뿐만이 아니고 시위 지역 상공에는 특수저격요원들을 태운 헬기까지 띄울 정도였다.

이번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로 인해 수백 명의 경찰들이 부상을 당하고 시립도서관과 2곳의 학교 그리고 경찰서와 수많은 상가들이 불타고 거리에는 흡사 폭탄을 맞은 것처럼 불에 탄 자동차들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인 소요사태의 피해보다 프랑스 당국을 더욱 긴장시킨 것은 다른 데 있었다. 이번 2007년 사태가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와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바로 외국인 이민자출신 젊은이들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 공권력에 대해 살상 무기까지 동원해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이었다. 흡사 국가를 전복시킬 듯한 태도로 폭력적인 과격 시위를 벌이는 북아프리카 출신 아랍계 젊은이들을 향해 경찰을 비롯한 프랑스 정부에서도 연일 강경한 발언들을 하면서 시위는 더욱 거세지게 됐다. 경찰은 이번 사태가 아랍계나 흑인 청년들이 주축이 된 인종적인 사태보다는 국가 권력을 전면 부인하는 폭동이라고 정의했고 2007년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미셸 알리오마리(Michèle-Alliot-Marie)는 이번 시위의 배경에는 어린 청년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불순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당시 총리였던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은 경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범죄자이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 때 시위자들에게 막말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켰었던 당시 내무장관 사르코지는 이번에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집권 우파 정부는 이번 파리교외 사태에 대해 ‘톨레랑스 제로’(Tolérance zéro, 무관용) 정책을 밝힘으로써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바람과 무관용 정책 발표는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됐는데 이번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를 겪은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오히려 대통

령과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갔던 것이다.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은 비록 외국인 이민자 젊은이들의 과격하고도 폭력적인 소요에 크게 놀라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부의 대응미숙을 질타하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에 이어서 이번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에서도 변함없이 무관용에 입각한 강경대응만을 주장했는데 이런 그의 태도가 국민들을 억압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그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했다.³²⁾

당시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 이후 프랑스 국민들은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의 과격한 폭력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표출하는 분노의 바탕에는 사르코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강경책으로 일관한 이민정책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여론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일부 국민들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지지했고 그 덕분에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르코지가 추구하는 ‘톨레랑스 제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더 큰 불만과 분노를 가져다줘서 진정으로 모두가 함께 융합하는 사회통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뜻밖의 불리한 여론결과로 인해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사태 이후 외국인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다시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형법 73개 조항을 수정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법안은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을 위해서 주택, 교육, 도시계획,

32) Le Monde, 2007, 11, 29, “Tolérance zéro, bilan zéro”, 톨레랑스 제로 정책 발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했다. 여론조사기관인 TNS/Sophres는 11월 29일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처음으로 50% 이하인 49%라고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 달 전만 해도 53% 정도를 유지했고 취임 직후에는 65%의 인기로 드골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인기를 받았었는데 공공 부문 개혁을 착수한 이후 내려가기 시작한 지지도가 이번 사태에 대한 그의 대응을 보면서 급기야 큰 추락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활조건 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들어있음을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독소조항은 신분증 검사, 사회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범죄자들에 대한 벽보 활용 등이었는데 이런 조항들이 결국에는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을 옳아매는 도구가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었다.³³⁾

사르코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여당이 추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 및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는 결국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프랑스 국민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그 다음 해 펼쳐졌던 지방선거에서 고스란히 표로 심판을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 다음 해인 2008년 3월 16일 실시됐던 지방선거였는데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여당 대중운동연합이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야당인 사회당에 패배해서 파리와 리옹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 시장 자리를 잃었던 것이다. 사르코지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말했던 공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가치로 계승해 왔던 ‘톨레랑스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그리고 전통적 약자인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일관적인 강경책 등이 선거를 통해 프랑스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³⁴⁾

33) Le Monde, 2007, 12, 17, “Démocratie en danger: le projet de loi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de Sarkozy”

34) Le Monde, 2008, 3, 17, “Impatients et mécontents font trébucher la droite”

제 5 장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제도와 관계기관

제 1 절 다양한 제도와 기관

우선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방향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으로서 즉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다. 이것은 기존 프랑스 사람들의 다문화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즉 기존 구성원들을 위한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교육’의 의미이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다문화 사회의 급속한 확대와 외국인들의 증가에 따른 기존 구성원들인 프랑스인들의 인식과 생각을 다듬을 필요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주민 자녀 학생들에게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를 위시로 한 ‘정규 학습 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교육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는 민족 중심적 사고를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점차 늘어만 가는 외국인들과의 접촉이나 다문화 사회로의 심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생 시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프랑스는 다른 다문화 국가들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주의’ 보다는 ‘문화다양성’을 그리고 ‘다문화 교육 éducation multiculturelle’보다는 ‘문화 간 교육 éducation interculturelle’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사용하는 식이다. 흔히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이라는 용어보다 좀 더 광의의 의미로 여겨지고 ‘문화 간’이라는 용어는 외국인들의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문화 간 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문화 간 교육’이라는 용어를

‘상호문화교육’이라는 좀 더 이해가 용이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장한업, 2009)

21세기 들어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각 나라들마다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나라가 ‘세계화’된다는 것은 단지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경제지표나 정치체제, 문화시설 등 외연적인 갖추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런 외연적인 모습에 걸 맞는 국민들의 생각과 제도에 대한 열린 생각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했던 ‘다문화와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교육부분의 세계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교육의 세계화도 단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고와 인식을 가진 특히 외국인들을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세계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두 가지 화두로 집약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적 과제로서 사회 통합의 문제가 그 하나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기가 다른 하나이다(이민경, 2007,재인용). 따라서 한 사회의 다양성을 긍정성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연대에 기반 한 인식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세계화 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 교육에서 중시하고 있는 ‘다문화 인식개선’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다문화를 교육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혹은 교육정책들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보도록 하자.

다문화 교육(문화 간 교육)이 프랑스의 교육기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였다. 특히 프랑스의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정책은 이 시기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실 교육 문제에 있어 프랑스는 1960년 이후 무상교육, 즉 전면적 공교육 체계를 완성했다. 특히 무상 의무교육과 더불어 종교적 색채가 없는(*laïque*) 학교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이 순조롭게 다문화 교육으로 잘 이어지지는 못했다.

사실 1970년대는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문화 다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특별했던 시기였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는 ‘무종교성 *laïcité*’, ‘공화국 정신 *esprit républicain*’, ‘대우의 평등 *égalité de traitement*’을 내세워 외국인 자녀들을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았고 그 어떠한 공식적인 서류에서도 그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 다문화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동안의 정책들이 변화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모든 외국인들을 온전한 공화국 시민으로 만들고자 철저히 동화주의적인 정책을 펴던 프랑스는 일부 사람들의 비판(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동화주의 정책은 모든 외국인들을 비록 공화국의 가치관에 따라 평등하게는 대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1970년대 들면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1978년 7월 25일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1990년대 들면서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착용 문제로 발생한 잡음으로 인해 퇴보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당의 총리였던 리오넬 조스팽(Jospin)은 ‘문화 간’이라는 용어를 아예 교육부 공식문서에서 삭제토록 하기까지 했다.

1. 다양한 교육제도: 우선교육지구(ZEP)의 실행과 어려움

2000년대 들면서 외국인 이민자 문제는 이민 2세들을 중심으로 프랑스 사회 진입의 문제로 확대되게 된다. 또한 증가하는 외국 이민자들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외국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ZEP이라 불리는 ‘우선교육지구 Zone d'éducation prioritaire’였다.

ZEP은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 donner plus à ceux qui ont moins’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프랑스 당국이 1981년 처음 시행한 교육정책이었다. 사회당의 프랑수와 미테랑이 집권하면서 외국인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설정된 것이 바로 ZEP이었던 것이다. 이 정책은 학업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선별적으로 교육활동을 강화(교사 및 교육 보조인력 확충)해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는 등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다. 원래는 4년 정도만 시행하려던 정책이었는데 제도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 중 중요한 개인간, 집단간 교육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이 정책은 1981년 9월 신학기에 맞추어 새로 확보된 11,625명의 교원 인력을 ZEP에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해프랑스 전역에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360개의 우선교육지구를 선정했고 이 지역 교사들에게는 연간 2천 프랑의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등 나름대로 교육격차 해소에 일조를 하면서 20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³⁵⁾ 초창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의 근무수당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35) 시행 이듬해인 1982년, 362개에서 1997년, 558개로 증가했다. 2005년 들어서는 더 증가해서 823개의 중학교 및 5537개의 학교가 ZEP에 속하고 약 140만 명 이상의

교사도 많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한 조사에 의하면 3년 이상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신임교사들이 ZEP소속 학교에 배치되는 일이 흔했는데 이들도 이 지역에서의 교직생활을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사명감이 아닌 단순한 직업으로 여긴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어쨌든 1981년 집권을 시작한 사회당 정부에서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의 사회적응과 부족한 교육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ZEP 정책은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방향에 의해 진행되게 된다.

ZEP정책의 구체적인 지향점

1. 지식의 평등한 접근: 특별한 교육과정보다는 학교 정규 과정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도달학습 목표를 정해서 달성토록 한다.
2. 이민자 자녀들의 읽기와 언어 숙달: 교육의 기본인 읽기와 쓰기 등 언어 교육을 강화한다. 이 부분은 ZEP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 영상교육 강화: 티브이, 컴퓨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이민자 자녀들의 언어와 문화 습득에 주력한다.
4. 조기교육 강화: 만3세부터 유치원에 가서 언어를 습득케 한다.
5. 상급학교로의 진학지도: 가난한 이민자 자녀들이 상급 학교에 갈 때 일종의 정보부족과 학습부진이 심하기에 교사증원, 안내책자 배부, 보충수업 등을 강화한다.
6. 시민교육 강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자의 정체성을 중시하도록 한다.

학생이 이곳에 다니는 실정이다. 이 숫자는 2005년의 경우 중학생 중 21.4%, 전체 학생 중 18%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참고로 시행 초창기인 1982년에는 중학생의 10%, 천체로는 8.3% 정도였다. 파리만으로 한정할 경우 이 숫자는 좀 더 증가해서 2009년 기준으로 약 32%의 학교가 ZEP에 해당된다고 본다.

7. 부모와 학교간의 연결 강화: 당국이 파악하는 이민자 자녀들의 학업 실패 원인 중 중요한 것이 바로 학부모들의 무지였다. 즉 ZEP이 시행하는 정책을 잘 모르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습권을 막는 일이 있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긴밀한 관계 설정에 주력한다.
8. 평가도구 마련: 우선교육망을 설치해서 우선교육 실행의 경험, 노하우 등을 잘 유지하게 한다.
9. 교사들에 대한 지원 확대: 교사 양성소 교육 참여, 신임교사 지원, 재정적인 도움 등 직접 학생들을 상대하는 교사들의 처우와 사기에 관한 것을 증강한다.
10. 담당 교사, 직원들의 경력상 이점 제공: 이 부분도 역시 교사들의 처우에 관한 부분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교사와 직원들에게는 경력상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11. 자치단체와 연계, 좋은 학교 개발: 이민자 자녀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³⁶⁾

이처럼 프랑스는 일찍부터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제도와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ZEP의 이런 여러 가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ZEP정책의 완전한 정착에는 어려움도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런 좋은 정책이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먼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었다. 즉 프랑스 교육 당국이 교사들이나 보조인력 개개인들에게 예산을 집중 배정해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했는데 정작 그들이 속한 학교나 교육기관은 경제적, 교육적 안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36) 조발그니, 『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정책보완에 주는 시사점』, 교육사회학연구, 제5권, 3호, 2005, pp 245-246

또 다른 이유는 가난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을 기피해서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이었다. 가난한 외국인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주된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특히 중학교 이상의 자녀들을 학교보다는 경제 활동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이것 말고도 프랑스의 통합정신에 비춰볼 때 이 ZEP은 약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가 중시하는 평등주의와 보편주의 통합정신과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라몽(P. Saramon)에 의하면 이 정책은 일종의 ‘긍정적 차별(La discrimination positive)’로서 비록 ‘덜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준다’는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어쨌든 모든 지역을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즉 교육소외가 심각하거나 사회경제적 차이가 현저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보편주의와 평등정신과는 일견 모순되는 부분이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ZEP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긍정적 차별이었던 것이다.³⁷⁾

ZEP으로 선정된 지역과 학교들은 교육소외에 대한 불리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 더 많은 교육자원을 지원받게 된다. 1990년대에는 도시정책의 차원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곳을 산업지역으로 선정해서 세금감면이나 다양한 면제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이들 지역 출신 젊은이들에 대한 고용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도 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프랑스의 최고학부인 그랑제콜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흡사 우리나라의 ‘농, 어촌 자녀 특별전형’처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ZEP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게 하기도 했었다. 이와 더불어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이 공직 진출시험을 좀 더 쉽게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 준비수업’³⁸⁾

37) P. Saramon, *Penser ou repenser les ZEP*, Harmattan, 2004, p. 48

38) P. Bouveau, *Les ZEP, entre école et société*, Hachette, 2000, p.129

을 지원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할 수 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실시됐던 ZEP이었음에도 이 정책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지역에 속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 실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 능력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 매년 두 차례, 즉 학년 초와 학년 말 학업 테스트를 하는데 특히 프랑스어 향상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³⁹⁾

이들 문제들과 더불어 ZEP정책이 도시외곽에서는 교육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시골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문제를 드러내자 프랑스 교육당국은 1997년 REP ‘우선교육 네트워크 Réseau d'éducation prioritaire’를 새롭게 만들게 됐다. ZEP의 선정과 실행 그리고 결과에 대해 성공과 실패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ZEP 프로그램은 그 결과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프랑스의 소외계층인 외국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제도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ZEP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는데 언어적인 부분(읽기와 독서)과 관계에 관한 부분(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인식에 관한 부분(시민의식 개선)이었다.

2. ZEP의 주요 역점사업

크게 3가지로 요약, 압축할 수 있는 ZEP의 역점사업 중 하나는 언어적인 부분으로서 학생들의 ‘읽기와 독서능력 향상’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사실 ZEP의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39) Francine Best, L'Echec scolaire, PUF, 1999, p. 57

볼 수 있다. 대부분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프랑스어의 습득과 활용은 그들이 프랑스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 외국인 이민자 출신 부모들 중 프랑스어를 수월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프랑스어에 의한 언어능력의 불평등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감소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당연하게도 직업 선택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언어적인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ZEP 프로젝트 중 90%는 언어적인 부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ZEP을 비롯한 프랑스에서 이처럼 프랑스어에 의한 언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학교문화의 영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는 학생들이 배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프랑스의 경우는 학생들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시하는 것은 이해한 것을 타인에게 프랑스어로 전수해줄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말하기를 비롯한 언어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취학 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로서 자기 의사를 정확히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연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구두로 의사 전달하는 능력 외에 프랑스어를 읽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연습을 시킨다.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어로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와 쓰기 연습이 된 이후에 비로소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을 위해 작문이나 발표 등 좀 더 수준 높은 단계의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어에 의한 연습을 통해 ZEP에 있는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 사이의 수준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ZEP이 중요시 여기는 정책인 것이다.

이처럼 언어적인 차이를 줄이려고 애쓰는 것은 실제로도 ZEP에 속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프랑스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지만 프랑스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프랑스어에 관한 것이고 프랑스어에 대한 어려움은 그들 외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순조롭게 뿌리내리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 때 사망한 두 젊은이의 집을 방문했던 사르코지는 그들의 부모들이 프랑스어를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다.

프랑스 사람들처럼 유창하지 못한 프랑스어 실력은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이라는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필요한 경제적인 일자리와 일을 하는데 큰 방해요소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ZEP의 주요 역점 사업 중에서도 언어적인 부분을 가장 중시했던 것이다.

3. ZEP을 통해 보는 교육정책의 시사점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교육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도 교육적인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1981년 7월1일 교육자 공문을 통해 처음 등장한 우선교육지역 정책, 즉 ZEP정책이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ZEP 정책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교육정책을 통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를 통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이를 감당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주도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측면에서 이들 소외계층을

순조롭게 주류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그들 젊은이들 자신이나 그들의 부모들의 경제적 여건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정부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교육뿐만 아니고 그들과 관계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의 개선까지 이루어 질 때 정부가 의도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 이민자 가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기존 교사들이 ZEP에 속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보더라도 이민자 출신 학생들의 학업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이민자 가정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므로 그들 자녀들, 즉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이들이 방치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인력과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셋째, 이민자 출신 가정의 학생들의 언어를 비롯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인력과 시설의 필요성이다. 앞서 언급했었던 것이 경제적, 생활적 부분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학력에 관한 부분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벌어지는 차이 중 하나가 바로 교육, 특히 사교육에 관한 것이다. 흔히 말하듯이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비 지출에 관한 것이다. 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즉각적으로 학력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학력의 차이는 곧 직업적인 부분으로 직결되기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바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시설 등이 되는 것이다.

공교육 외에 특히 낙후됐거나 이민자 출신들이 많은 지역에는 일종의 교수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빈곤한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다양한 교육제도: 우선교육제도와 엘코(ELCO)프로그램

한편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제도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제도들을 통칭해서 '우선교육제도 Education prioritaire'라고 일컫는다. 이들 우선교육제도와 엘코 프로그램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교육제도

- 1) ZEP(Zone d'éducation prioritaire, 우선교육지구, 1981, 1990)
- 2) REP(Réseau d'éducation prioritaire, 우선교육네트워크, 1997)
- 3) RAP(Réseau ambition prioritaire, 우선희망네트워크, 2006)
- 4) RRS(Réseau de Réussite Scolaire, 학교성공네트워크, 2006)

1997년 만들어진 '우선교육네트워크'는 ZEP제도를 현실화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선희망네트워크'와 '학교성공네트워크'는 다문화 교육의 개선보다는 지역 간, 학교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한 실제 필수 교과 내용의 교육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다.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1975년 들어 외국인 이민자 출신 가정의 순조로운 프랑스 사회 적응을 돋기 위해 '외국인 이민자들의 언어와 문화교육Enseignements de langue et de culture d'origine'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엘코 ELCO' 프로그램으로 불린 것으로서 취지는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사회 적응을 돋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상은 좀 다른 면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설립 취지와는 달리 외국인 이민자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

될 것을 염려해서 이민자들에게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보다는 그들 외국인 이민자들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준비 시켜 주기 위한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의 기대와는 달리 외국인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프랑스에 영구 정착하는 비율이 점차로 높아지게 됐다. 이들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영구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들 이민자 출신 자녀들이 프랑스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들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학교로의 순조로운 통합을 위해 1975년부터 1984년에 걸쳐 새로운 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카스나브 이전에 있었던 ‘세피젬CEFISEM’이었다.

5. 다양한 교육제도: 세피젬 CEFISEM

‘세피젬’은 Centre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migrants의 약자로서 ‘이민자자녀 학교 적응을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특히 세피젬이 역점을 두었던 것은 외국인 이민자 출신 가장의 어린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세피젬 차원에서 초등학교에는 ‘통합반 Les classes d’integration: CLIN’을, 중학교에는 ‘적응반 Les classes d’adaptation: CLAD’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었다.⁴⁰⁾ Meunier(2007)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 통합반의 학생 수는 8,000명 정도에서 1976년에서 1983년 사이에는 약 10,000여 명으로 늘었다가 1990년대에는 3,600명 정도로 감소하였다. 현재 총합반의 학생 수는 전체 외국인 학생 수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 중 절반 이상이 파리나 리옹, 그리고 마르세이유 등 프랑스의 3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통합반에 다니는 학생들의 주요 국적은 비 프랑스어권

40) 특히 중학교 과정의 ‘적응반 CLAD’을 고등학교 과정과 통합해서 ‘안내반 Les classes d’acceui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프리카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적응반의 학생 수는 1970년 대 초반에 1,500명 수준에서 1990년대에는 5,000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적응반의 학생 분포는 통합반과 비슷하나 여기에 덧붙여 터키인 자녀들이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이경수 재인용, 2008)

통합반과 적응반, 즉 이들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일종의 특별반들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의 일반 학교와 학급으로의 적응을 돋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강좌반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FLE*’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이상 살펴 본 통합반과 적응반 외에도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를 ‘재수강수업 *cours de rattrapage: CRI*’이라고 불렀다. 이 수업은 다른 수업과 달리 말 그대로 부족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으로 매 주당 추가로 몇 시간의 수업을 듣는 것이었고, 통합반은 프랑스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 특별 프랑스어 과정을 강화시킨 반으로 프랑스어 실력에 따라 3, 6, 9개월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파리의 경우 시내 20개 구별로 하나나 두 개 정도의 학교를 정해서 특별 프랑스어 적응반을 두고 외국인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원할 경우 배정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외국인 이민자 가정 출신 자녀들의 프랑스어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세피젬은 2002년 들어 이 센터가 하던 기능에 몇 가지 새로운 역할을 추가해서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센터’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카스나브 CASNAV’였던 것이다.

6. 다양한 교육제도: 카스나브 CASNAV

‘카스나브 Centres acadé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s’는 2002년 공표된 시행령에 의해 다

음의 역할과 활동을 하게 됐다. “CASNAV의 활동은 프랑스에 새롭게 정착한, 아직 프랑스어에 서투른 자녀들이나 비정착 자녀들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들 자녀들의 안내에서부터 일반 학급으로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카스나브CASNAV에서는 교육적, 인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 이외에 그들 가족들과의 협력 및 중계 역할을 맡게 된다.”(Meunier, 2007,재인용)

특히 카스나브 파리 센터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민자 가정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학교입학정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조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에 관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와 문화 등 학습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특별 프로그램을 퇴직한 프랑스 사람이 자원해서 가르치기도 한다. 또한 지역의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이민자 출신 학생들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 이민자 출신 아이들에 대한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소모임을 만들어 서로 정보와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카스나브는 이민자 자녀들을 맞아서 프랑스 사회로 잘 통합하도록 도와주고, 그들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육자들에게 전달하고, 특별 학급 교사들과 일반 학급 교사들의 정보망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이런 카스나브의 방침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 중등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대상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⁴¹⁾

41) www. casnav.scola.ac-paris.fr에 의하면 2008년 파리 카스나브의 운영 현황을 보면 파리 시내 20개 구 중에서 15개 구에 62개의 CLIN반이 개설 되어 있으며 총 605 명의 어린이가 등록하였다. 한 해 전의 615명의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2% 정도의 감소를 보인 상태이다. 등록 학생들의 국적을 보면 중국(29%), 루마니아(6,2%), 알제리와 폴란드(4,2%) 그 외 기타 국가로 구성된다.

이렇듯 오랜 세월동안 프랑스에서는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러 정책들과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쌓여 있다가 결국 사회적 현실로 대폭발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2005년도 발생했었던 파리 외곽 방리유 사태와 2007년 빌리에르 벨 사태 등과 같은 것이었다.

이들 소요사태들은 프랑스의 다문화 관련 정책들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새로운 대안책들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제 2 절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문제와 과제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은 몇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자.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

첫째, 다문화 교육을 프랑스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가 기관들은 다문화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조금은 소극적이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비롯한 사람들도 역시 소극적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식 전환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아직도 모든 교육 내용에 민족 중심주의가 남아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 자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셋째, 교사 양성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을 등한시 한다는 것이다. 고작 몇 시간의 시간만을 할애해서 받는 다문화 관련 교육이 전부인데 이것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런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관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상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상황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전환시키는 것일 것이다. 오랫동안 ‘동화’와 ‘통합’에 따른 교육을 받아왔던 프랑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좀 더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에 관한 것은 2005년 파리 방리 유 사태와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의 근저에 깔려있던 불만으로 프랑스 당국이 원하고 실행하는 정규교육을 잘 이수한 이민자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그동안 받았던 교육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혹은 사회적 차별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 통계청(INSEE)의 기록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정규 학교 교육 이후에 이민자 자녀들과 프랑스인 자녀들의 사회진출 차이를 통해 확인해 드러난다.

1. 실업률(Taux de chômage)

남자 비이주민: 6.8%	여자 비이주민: 7.8%	평균: 7.3%
남자 이주민: 13.5%,	여자 이주민: 17.3%	평균: 15.2%

위에서 보듯 비이민자 프랑스인들의 실업률이 7.3%인데 반해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15.2%로 두 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24세부터 45세까지의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을 보자.

2. 24-45세의 프랑스인과 이주민의 실업률(최근 5년)

	비이민자	이민자
2006년	7.1%	16.7%
2007년	7.4%	16.7%
2008년	7.4%	15.6%
2009년	7.4%	15.6%
2010년	6.5%	15.3%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 24세부터 45세까지의 이민자들의 실업률이 프랑스인들보다 5년에 걸쳐 약 2배 이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실업률이 보여주는 도표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수치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위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번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와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이민자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교육, 즉 나라가 원하는 공교육을 잘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진출에는 매우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기존 프랑스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높은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민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대학 학위’가 경제적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의미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은 이민자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들이 가진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경험하며 소수자로서 살아온 그들에게 다

문화 교육은 그들이 좀 더 쉽게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반드시 되어줘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는가. 프랑스 이민자들이나 그 자녀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들 이민자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은 설사 정부 당국이 말하는 학위나 경력을 갖추었다 한들 자신들이 희망하고 자신들의 경력에 어울리는 경제적 보상을 얻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민자 자녀들이 프랑스 당국에 갖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이었고 이런 근본적인 불만들이 비극적인 폭력으로 번진 것이 바로 2005년도의 파리 방리유 사태와 2007년 빌리에르벨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다. 지난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와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이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민자 자녀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무관심하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그 경종은 바로 그동안의 프랑스 다문화 교육이 주로 프랑스어 언어수업이나 문화적응 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70년 만들어진 프랑스어 기초반과 학교의 프랑스어 적응반이 그 증거였다. 그 이유는 프랑스에서의 학교는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사회적, 문화적, 직업적 통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 여겨졌다. 그들 이민자 자녀들이 프랑스 학교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 사회에 잘 통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교육 당국은 프랑스어 습득여부를 프랑스 사회로의 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겼던 것이다.

사실 이 프랑스어 교육은 초기 이민 1세들이나 1.5세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프랑스에서 출생하는 이민자 2세, 3세들이 프랑스어를 구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생각하는 다문화 교육의 온전한 열매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다.

제 3 절 한국의 다문화 교육이 추구할 방향

우리나라보다 약 40년 정도 앞서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몇 가지 방향성을 보도록 하자. 먼저 유네스코가 정의한 다문화 교육을 보면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며, 문화 교류와 체험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니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다문화 교육의 선구학자인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을 다양한 문화, 민족, 성, 사회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그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교류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돋는 중요한 목표를 가진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 속에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초등, 중등 교육현실은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 자녀들의 경우 의사소통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독해와 쓰기이다. 이런 능력들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 발달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수업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것은 학교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런 이민자 자녀들은 떨어지는 학습능력과 조금 다른 외모 등으로 인해 학습의욕이 떨어지니 기존 학생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을 겪

는 일도 흔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초등, 중등학교 차원의 다문화 교육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을 간추려보자.

우리의 다문화 교육이 보완할 점

첫째, 한국 학생들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의 증대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거의 모든 나라들은 수많은 외국인 이민자 출신들을 맞이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해야 하고, 또 우리들도 해외에 나가서 생활할 기회가 늘어나기에 이들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대한 재조정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돌봄 교육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이민자들은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외국인 부모들의 자녀들이다.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이민자 자녀들의 방과 후 삶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들이 정상적인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자 자녀들의 돌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보충교육과 심화교육의 필요성이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외국어로 아랍어와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가 손꼽힌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에게 예외는 아니다. 이들 자녀들을 들을 위한 학습적인 관심과 추가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이상 몇 가지 우리 사회가 유의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외국인 자녀들이 특히 한국어로 인한 학습부진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즉 한국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다문화 교육’과 ‘수혜자 중심의 다문화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랜 다문화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역사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프랑스도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 이후로 이슬람 계통과 기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고, 사르코지를 비롯한 우파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는 외국 이민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특히 기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걱정과 외국인 혐오증으로 인해서 ‘제노포비아’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외국인 이민자들로 인해 프랑스의 경우 같은 대규모 폭동에서는 아직은 안전지대이기는 하지만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외에도 기존 구성원들인 한국인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꼭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민자 자녀들의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2005년 파리 방리유 폭동사태와 2007년 빌리에르 벨 사태에서 보듯 소요사태가 일어난 표면적인 이유는 감전사한 10대들과 경찰차에 부딪혀 죽은 외국인 청년들로 인해서 촉발됐지만 실상 그 바탕에는 그동안 잠재돼있던 경제적 불평등과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차별과 억압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다문화교육이 되려면 이민자 자녀들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많은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제 6 장 프랑스의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

어떤 나라의 개방성과 관용성을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국가의 이민 관련법과 이민자 출신들에 대한 처우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특정 국가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평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불법체류에 관한 그 나라의 정책과 처우를 살펴보는 것은 한 나라의 개방성과 관용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관용적이었고 특히 많은 나라들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도망온 정치 망명객들에게도 넘치는 관용을 보여주던 나라였다. 앞서도 말했듯이 프랑스라는 나라를 떠 올리면 ‘문화와 예술의 나라’라는 이미지 외에도 ‘인권과 톨레랑스의 대표적인 나라’라는 등식이 쉽게 성립했었다. 정치적 망명객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체류한 지 10년이 넘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관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다. 또한 프랑스는 비록 불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되지만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억압하거나 강제적인 추방조치들을 잘 취하지 않고 관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80년대 미테랑 대통령을 비롯한 좌파 사회당 정부가 권력을 잡고 정국을 운영하는 동안 이런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 이민자 정책들은 잘 유지되었고 이것이 바로 프랑스를 인권국가 혹은 톨레랑스 국가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확고히 해준 계기가 됐었다.

그렇다면 21세기로 접어든 지금의 프랑스의 상황은 어떠하고 외국인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프랑스 국민들의 시선과 이민자 정책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 시대에도 프랑스는 과연 과거의 인권국가와 톨레랑스 국가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좌파 사회당에서 우파 대중연합으로 정권이 옮겨 간 이 시대에 프랑스는 더 이상 과거의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이민자 정책과 법제들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프랑스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혹은 늘어난 외국인 이민자 출신들에 의한 다양한 사건 등이 생기면서 외국인 이민자들에 관한 정책들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전선(Front national)’이라는 극우파 세력⁴²⁾이 점차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인기를 얻자 우파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이민법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안이 바로 악명 높았던 이민법으로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사르코지의 이름을 따서 일명 ‘사르코지 법안(loi Sarkozy)’이라고 불렸던 것이었다. 기존에 있던 프랑스의 이민과 이민자들에 관한 법안이 어떻게 변화했고 강화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제 1 절 이주정책 부분

1. 이민법 강화의 배경과 과정

‘사르코지 법안’의 정식 명칭은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Projet de la relatif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이었는데 2006년 6월30일 하원을 통과했고 이어서 상원에서도 무사히 채택됨으로서 확정되었던 법안이었다. 이 강화된 이민법은 기존에 프랑스에 체류하던 외국인은

42) 전형적인 극우파인 ‘국민전선’은 1972년도에 형성되었으며 70년대 당시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고 지지율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물론이고 나중에 프랑스로 올 계획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 모두에게 흡사 족쇄처럼 작용하게 되는데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자.

사르코지 법안이라고 불렸던 이 이민법이 확정된 것은 2006년이었지만 그 시발점은 멀리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압도적인 인기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우파 연합의 자크 시락(J. Chirac) 대통령은 그해 10월 프랑스의 미래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게 된다. 프랑스 통합모델에 관한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프랑스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과 개혁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이민자들에 관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총리였던 라파랭(Jean-Pierre Raffarin)과 사회부 장관이었던 피옹(François Fillon)에 의해 새로운 외국인 이민자들에 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종인 ‘유입 통합계약(Contrats d'accueil et d'intégration)’이 발표되게 된다.

사실 프랑스에서 외국인 이민자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극우파인 국민전선의 당수였던 르펜(Le Pen)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당시 인기 있던 후보였던 사회당 후보인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을 누르고 결선투표에 올라간 것이 그것이었다. 르펜의 승리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는데 특히 국민전선의 선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 이민자 문제를 국민전선의 전유물로만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전선이 이슈화하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특히 좌, 우파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전선을 따라 이민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권후보였던 사르코지가 대선 전략으로 외국인 이민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선거용으로 이용하게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르코지에 의한 강력한 이민자 법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사르코지 이전에 강력한 이민 정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르코지에 앞서 1993년 우파연합의 내무장관이었던 파스쿠아(Pasqua)는 1993년 의회에서 통과 된 ‘파스쿠아 법(loi Pasqua)’을 제정했는데 당시 이 법의 내용은 프랑스 시민권 취득조건의 강화, 신분증 검색 강화, 망명신청, 그리고 결혼 등으로 프랑스에 입국할 때 입국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극우파의 전유물이었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 등을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강화된 이민법인 일명 ’사르코지 법‘이 단지 2006년과 2007년 들어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그 뿌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강화된 이민법과 계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외국인 이민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와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계약의 목적은 프랑스 공화국의 정체성 강화와 합법적 이민의 정비를 위한 사회통합실현, 그리고 프랑스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완벽한 의사소통을 위한 프랑스어의 사용 등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계약은 다년 계약이 아닌 1년씩 계약을 맺고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으려면 자발적으로 500시간의 프랑스어 수업을 듣고 한나절의 프랑스 전반에 걸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계약에 앞서 2001년과 2003년 ‘고위통합위원회’의 보고서는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수용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가가 일부 필요한 부담금을 제공하는 ‘유입통합계약’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어 교육 및 시민교육, 프랑스 생활교육, 그리고 필요한 생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이 프랑스에 입국한 외국인 이민자는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와 필요한 제도들을 습득하도록 했다. 이런 목적과 바람을 갖고 시행된 ‘유입통합계약’은 합법적인 외국인 이민자들의 수용과 관련해 이 계약

에 법적 토대를 제공한 2005년 1월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법’에 의거해 설립된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Agence Nationale d’Accueil des Etrangers et des Migration)’에 의해 시행되었다.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이 바로 이 ‘유입통합계약’을 총괄하고 프랑스에서의 생활 소개와 안내 등 사회통합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맡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행된 ‘유입통합계약’은 2003년 7월1일부터 매 년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는 약 십만 명의 새로운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이 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이처럼 외국인 이민자들이 순조롭게 프랑스에 정착하고 프랑스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돋기 위한 유입통합계약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슬람 소녀들에 의한 ‘히잡 사건’이 발생하자⁴³⁾ 프랑스는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 이후 그동안 자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던 통합교육이 강제성을 띠는 의무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데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2003년 11월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사르코지가 제출했던 일명 ‘사르코지 법’이었다. 처음 이 사르코지 법은 프랑스 공화국을 구성하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공화국 원리와 가치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화국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이민자들을 순조롭게 프랑스에 동화시켜서 사회통합을 시도했던 그동안의 이민자 정책은 급기야 무슬림 이민자 젊은이들

43) ‘히잡사건’은 먼저 1989년 발생했는데 공립학교에서 히잡을 벗지 않으려는 이슬람 여학생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이는 사회여론에 힘입어 퇴학과 재입학을 반복한 사건으로 2003년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학교내에서 특정 종교 상징물인 히잡을 착용함으로서 프랑스가 강조하는 정교분리 원칙(*laïcité*)에 어긋난 행동을 한 무슬림 청소년들의 의식문제로 부각되고 이것은 프랑스 공화국 통합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참고로 프랑스는 1905년부터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종교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이 제정되어 강력한 통합주의 정책을 내세워왔다. 이것의 정식 명칭은 ‘정교분리원칙의 적용에 있어 공립 중, 고등학교에서 종교적 외양을 드러내는 옷이나 상징물의 착용을 포괄하는 2004년 3월 15일의 법’이다.

이 주축이 된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를 겪으면서 프랑스 정부의 생각이 변화하게 된다. 그동안의 이민자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이민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법을 내놓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사르코지가 제출한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인 것이다.

2.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 (일명 2006년 법률) (*Projet de loi relatif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loi du 14 novembre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egration*))

이런 다양한 배경과 과정을 거친 이번 이민법은 흔히 ‘외국인 이민 동화법’으로도 불리는데 프랑스 정부의 외국인 이민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민법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의 외국이민 수용능력과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한 ‘선택적 이민허용’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성공적 동화와 사회통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일명 2006년도 법률은 사르코지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내무장관이 된 다음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총 7장 121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르코지가 과거 첫 번째 내무장관 시절 만들었던 이민법보다 좀 더 강경해졌고 그 핵심내용도 외국인 이민자 숫자의 조절에서 프랑스에 필요한 이민자만 받아들인다는 ‘선택적 이민(immigration choisie)’을 그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사르코지의 이번 법안은 역시 사회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많은 비난을 받았고 르몽드에 의하면 특히 대통령 선거 때 극우파와 르펜의 표를 의식한 법안이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했었다. 그 이유는 사르코지와 르펜의 대선 구호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그 증거였다.⁴⁴⁾

44) Le Monde, 2006, “La France, aimez-la ou quittez-la,(Le Pen) Si certains n'aiment

이 법안의 첫 번째 목적인 선택적 이민허용은 사실 미국의 그린카드를 모방한 것으로 프랑스 사회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정보기술자, 그리고 엔지니어 등만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르 몽드에 의하면 당시 집권여당의 대변인이었던 도미니크 파이예(Dominique Faillé)는 아예 직접적으로 “우리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성장과 통합에 이바지할 외국인 이민자들을 원한다”고 하면서 선택적 이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⁴⁵⁾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는데 있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왔는데 하나는 거주지 우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출생지 우선주의였다.⁴⁶⁾ 이 두 가지 원칙은 오랜 전부터 프랑스에 이미 거주해온 외국인 이민자 1세대와 그들이 프랑스에서 사는 동안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2006년 강화된 이민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프랑스 거주(결혼의 경우 2년)와 기본적인 프랑스어 구사 능력만 구비하면 누구나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강화된 이민법으로 인해 이런 조건들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화된 이번 이민법은 프랑스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외국인 이민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불법적인 외국인 이민자의 프랑스로의 유입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 법안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 가족 재결합규정(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이민자가 자신의 가족을 프랑스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규정), 국제결혼, 체류 허가증,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자의 신분 합

pas la France, qu'ils se gênent pas pour la quitter.(Sarkozy)

45) Le Monde, 12, juin, 2008,

46) 거주지 우선주의는 현재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나라의 국적을 주는 것이다. 출생지우선주의는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해당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화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추방 등의 규정을 과거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고 강화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법안이다.

가족 재결합을 위한 요건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가 자신의 가족을 프랑스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갖고 1년 이상 프랑스 체류 조건만 채우면 가능했는데 이번 이민법의 강화로 인해 이제는 1년이 아닌 최소 18개 월 체류 조건을 채워야 하게 됐다. 즉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구비한 외국인 이민자의 해외 거주가족들은 가족 동반사증을 얻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중요시 여기는 강화된 가족 재결합(regroupement familial)요건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재결합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가 아닌 외국인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합치기 위해 체류증을 받는 제도를 말하며 유럽연합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합법적인 외국인이 자신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와 합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지 최소한 18개월이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이 자신의 가족과 프랑스에서 결합해서 살기 원한다면 최저임금(salaire minimum de croissance)이상의 돈을 매월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프랑스 국내에 합법적인 거주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정교분리원칙, 남녀평등원칙, 일부일처제 등 프랑스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가치를 존중하고 위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상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이번 법안이 중요시 여기는 가족재결합을 위해서 외국인 이민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국제결혼을 위한 요건도 과거보다 강화되어서 프랑스 사람과 합법적인 결혼을 올린 외국인 이민자의 경우 과거에는 결혼 기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이민법의 강화로 인해 이제는 최소 4년의 기간 동안 결혼을 유지해야만 됐다. 또한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살 경우 과거 3년의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정부의 강화된 조치는 물론 프랑스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귀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일정기간 이상 프랑스인 배우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프랑스 국적 취득만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결혼한 것처럼 꾸미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프랑스에 입국한 첫 해 거주 지역 경찰청에서 유효기간 1년의 ‘체류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하며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체류증을 갱신해야 한다. 그렇게 3년이 경과된 후에는 내무부에 유효기간 10년의 ‘거주증(carte de résidence)’을 신청할 수 있으며 4년이 지나면 아예 ‘귀화’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정상적인 프랑스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민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출생한 프랑스인’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요건도 선별적으로 혜가를 주고 특별하거나 프랑스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들만 선별적으로 택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프랑스 회사의 고용주가 원하는 분야의 노동자들과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년이 아닌 1년 체류증(연장 가능)을 혜가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또 하나 이번 이민법 강화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여겨졌던 것은 ‘신분합법화 법안(loi chevenement)’이 완전히 폐지됐다는 것이다. 신분합법화 법안은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비록 불법적인

체류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프랑스에 거주했으면 추방 시키지 않고 정식 체류증을 허가해주던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 이민 법의 강화 조치로 인해 신분합법화 법안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법적인 체류로 인해서 정식 체류증이 거부되는 경우 다른 특별한 방법 없이 프랑스를 원하던 원하지 않던 떠나야만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불법적인 체류를 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어떠한 관용적인 조치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됐다.

3. 이민, 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률 (일명 2007년 법률) (*loi du 20 novembre 2007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à l'intégration et l'asile*)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사르코지는 ‘선택적 이민정책’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자신의 공약대로 ‘이민, 통합, 국가정체성, 공동발전부(*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를 신설해서 선별적 이주 정책, 가족여부 검증을 위한 DNA검사, 그리고 불법이민 통제를 위한 단속쿼터제 등의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새로운 부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민자 문제와 국가정체성을 동일 선상에 배치함으로서 흡사 프랑스의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사르코지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이 부처의 주요 임무는 그가 담당자들에게 보낸 행정서신의 내용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장관께서는 매년 다양한 이민동기에 따라 이민자의 수의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캐나다 또는 영국 등 몇몇 우방국들의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들은 이민 신청자들을 출신지역

이 어디인가가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기준들을 통해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⁴⁷⁾

사르코지의 이 행정서신을 보면 새로운 부처의 주요 임무는 바로 이민자 수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부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매년마다 이민자의 수를 조절하고 출신지역을 감안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사르코지의 의중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출신지역에 근거해서 다른 지역보다 프랑스에 해가 될 수 있는 이슬람 출신 이민자들을 속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과거에 비해 프랑스의 외국인 이민자 문제에 대한 처방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부처와 이민법이 가능해진 것은 사르코지의 대선 승리 덕분이었다. 사르코지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르코지 본인이 인정했던 것처럼 국민전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었다는 것 보다는 2007년 대선 결과보고서⁴⁸⁾에 의하면 그보다 더 중요했던 다른 원인이 있었다. 사르코지 당선의 가장 일등 공신은 바로 우경화의 분위기가 팽배해져가는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가 가장 큰 뒷을 했던 것이었다. 이런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가 있었기에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이민자 문제에 있어 강경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르코지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정부의 외국인 이민자 정책이 관련 법률(2006년 법률)을 보완하고 보강하면서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2007년 9월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DNA관련 결정이었다.

47) 박선희,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 국제정치논총, 50호, 2010, 재인용.

48) Sylvie strudel, Enquête post-électorale présidentielle 2007: Nicolas Sarkozy: Analyse socio-démographique des votes, Le Panel électoral français, Centre de Recherches Politiques de Sciences po.

프랑스 정부는 정기체류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족관계나 혈연 관계 입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91대 45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입장은 불법체류자들의 서류위조와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민법 반대론자들과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법률이야말로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우파정부의 성향을 한마디로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법률 속에는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인종에 관한 평등을 허무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그동안 프랑스는 주민들의 인종적 배경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을 금하는 평등법을 지켜왔는데 이번 법률로 인해 이민 담당 정부부처에서 필요하다면 이민자들의 인종과 종족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⁴⁹⁾ 이 외에도 외국인 이민 신청자가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과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적정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이주, 통합, 국가정체성, 공동발전부는 2007년 5월 16일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 이틀 후인 5월 18일 법령에 의거해 6월 1일 신설되었으며 이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 할 초대 장관에는 브리스 오르트페(Brice Hortefeux)가 임명되었다. 담당 장관의 이름을 따서 2007년의 이 법안은 일명 ‘오르트페 법안(loi Hortefeux)’이라고도 불렸다. 이 법안은 2003년부터의 사르코지 이민관련 모든 법을 총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 통제 통합, 망명에 관한 법’은 2007년 10월에 의회를 통과했지만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많은 반대에 직면한 이유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인권적 차원이 아닌 경제적 효용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점이었다. 이를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의 근거가 되는 ‘선택적 이민(immigration choisie)’

49) 박병수, 「프랑스 이민신청자 DNA 논란」, *한겨레신문*, 2007, 9, 21

개념이 결국은 ‘이민배척(immigration jutable)’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르트페 초대장관의 후임 장관조차도 이 법안의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비록 다양하고 거센 반대의견에 막혀 고전하고 있지만 사르코지가 신경쓰는 이 법안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위의 부처는 그동안 4개 부처에 나뉘어져서 분산돼 있던 난민문제와 이민자 유입문제 그리고 체류자격 문제와 외국인과의 결혼문제들을 한 곳으로 단일화해서 업무를 하게 됐다. 이처럼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이민자 관련 업무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이민의 흐름을 억제하고 통합을 촉진하며 프랑스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확립하고 공동 발전을 장려한다는 4대 목표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자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이 부처로 인해서 과거 난민문제는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내무부 산하의 ‘난민 무국적자보호국(Office français des réfugiés et apatrides)’, 이민자 유입과 국적문제는 노동, 사회연대부 산하의 ‘인구이민국(Direction des populations et des migrations)’, 체류자격 문제는 내무부 산하의 ’공공자유국(Direction des libertés publiques)’,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문제는 ‘법무부 중앙행정처(Chancellerie)’가 하던 일들이 이번 새 부처로 합쳐지게 됐던 것이다. 이처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면서 까지 지난 2006년도에 만들어진 이민법을 보충해서 더욱 강력한 외국인 이민자들을 억제하고 추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선보였다.

새롭게 보강된 이번 2007년 이민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6년의 강화된 이민법에 이어 가족재결합 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불법 체류자들에 관한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호유치 기간을 기존의 12일에서 30일로 대폭 늘려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억제하는 등의 불법이민 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이민, 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새롭게 추가됐다는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도가 돼서 새롭게 강화한 이번 2007년의 법률이 위력을 발휘한 결과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온 외국인 이민자 숫자가 2.6%정도 감소하고 망명허가 역시 과거에 비해 무려 35%나 감소하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에 관한 추방조치도 강화하면서 불법체류자 강제추방도 2005년 22,000명 선에서 33,0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점차로 톨레랑스(관용)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⁵⁰⁾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후반기 6개월 동안 유럽연합의장을 맡게 되면서 강화된 이민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논란을 만들어내기도 했다.⁵¹⁾

프랑스가 이처럼 전통적 약자들인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점차로 축소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이 없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역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부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2006년, 2007년 연속으로 이민자들을 억제하고 불법추방을 강행하는 다문화주의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잡음도 생겨나게 됐다.

2010년 현재 프랑스의 불법 이민자의 수가 약 35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데 이중 약 8만 명 정도가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약 5만에 육박하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출생했거나 아주 어린 시절에 프랑스에 와서 자

50) 프랑스 내무성 사이트 참조, www.intérieur.gouv.fr

51) Le nouvel Observateur, 2008, 1, 31, “Sarkozy juge prioritaire un pacte sur l'immigration en Europe.

신들의 모국어조차도 능숙하지 못한 이들 어린이에 대한 추방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법안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심이 된 우파가 시도하는 강력한 이민제한 정책과 우파정부를 지지했지만 막상 어린이들을 포함한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추방이 집행되자 정부의 무리한 추방정책에 대한 반감이 형성됐던 것이다. 정치인, 종교인 그리고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사르코지 법안 자체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와 시위가 형성되기도 했다. 몇몇 종교단체들은 이들 어린이들의 강압적인 추방을 막기 위해서 이들 어린이들을 자신들의 대자(종교적 양자)로 삼기도 했고 좌파 정치인들은 강화된 이민법은 그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⁵²⁾

그렇다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중시하던 톨레랑스(관용)정책을 대폭 축소하게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프랑스가 그동안의 톨레랑스 정책을 포기하게 된 주요 이유는 파리나 리옹 그리고 마르세이유 등 프랑스의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점차 심해지는 빈곤화와 늘어만 가는 범죄화를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와 2007년 빌리에르벨 사태도 이번 이민법 강화에 주된 이유가 됐고 다른 하나는 불안한 치안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극우진영의 비판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돼서 집권여당인 대중운동연합은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조건을 강화시키게 된 것이다.

프랑스 사회의 실업문제와 복지제도 문제 그리고 급증하는 외국인 이민자 문제에 대한 개혁과 관련해서 강화된 이번 이민법이 나오게 된 바탕에는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52) Miguel Benasayag, *La chasse aux enfants*, Editions La Découverte, 2008, p, 5-10.

정책을 장기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데서 나오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런 이민법 강화가 비단 프랑스만의 경우는 아니어서 프랑스의 외국인 이민자 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이민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과도한 불법 이민자들의 유럽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1974년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만들었던 이런 이민법 이후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민을 불허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의 각국은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자의 증가 같은 인구 구성상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에도 아직까지는 이민법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⁵³⁾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장기 불황의 여파가 미치자 유럽연합 각국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전면 금지시켜 버렸다. 이처럼 유럽 각국이 외국인 이민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편 결과 흡사 아메리카 드림처럼 유럽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유럽으로 몰려든 수많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체류증을 받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53) 은재호, 「프랑스 소요사태와 이민실태 분석」, 정세와 정책, 2005, 12월호, “작금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늘어가는 고령자에 관한 것이다. 유럽의 국가들은 현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노동활동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가 부족하게 되고, 2050년경에 이르면 5천 만 명이 부족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외국인 이민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이민자의 시민권 획득을 금지했으며 유럽 국가 이외의 이민자들 중 미숙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의 영국 취업을 금지하는 반이민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07년 6월 외국인 강제추방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나라들은 공동으로 국경을 관리하는 ‘프론텍스(frontex)’라는 관리 기구를 조직하기도 했다. 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에게 전자 생체인식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문과 얼굴을 스캔해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외국인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좌파와 우파 정치인들처럼 양분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예전 사르코지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을 억제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과 치안 부재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중시하는 인권과 양심 톨레랑스의 관점에서 외국인 차별과 억압 그리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추방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프랑스 사회이다.

제 2 절 고용정책 부분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동화주의 모델의 이념에 따라 인종에 다른 차별의 논의가 금기시되었다. 즉 프랑스의 사회통합원칙은 ‘평등(égalité)’으로 대표되는 공화주의 원리를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도 1990년 국적에 따른 차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었다. 프랑스 정부도 역시 1998년 이후 공공기관, 민간기관들과 인종차별퇴치 협정을 체결하여 협정 당사자들에게 인종차별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통합 및 차별퇴치를 위한 지원기금(Fonds d'action et de Soutien pour l'intégration et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 FASILD)’을 통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의 고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종차별 없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토대가 아직 완전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은 특히 외국인 이민자들의 적극적 고용조치에 관한 정부 차원의 법률적인 토대 역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⁵⁴⁾

54) 노대명, 「최근 프랑스 소요사태에 대한 단상」, 복지동향, 2006, p. 32

물론 인종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프랑스에 전통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인종차별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잘 지켜졌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 사회 생활에서는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 특히 이슬람계 젊은이들은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겪는 일이 아주 흔했다. 이들 이슬람계나 아프리카계 젊은이들은 프랑스인들과 다른 외모뿐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관한 개선 필요성을 프랑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라는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주동이 된 프랑스 사회에 대한 반발을 본격적으로 표출했던 사건이었다. 이 소요 사태를 겪으면서 프랑스 정부에서도 소수인종인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정책을 재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의 주요 원인이 노동과 주거 그리고 고용 문제에 있어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있다고 보고 소요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에 대한 차별 배제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입법화해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등장하게 된 고용에 있어서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법률이 바로 2006년 3월 만들어진 ‘기회균등법(loi pour l'égalité des chances)’이라는 법률이었다. 이 법안보다 앞서서는 2001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고용을 포함한 모든 차별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차별받는 외국인 이민자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책임지고 부담하도록 하였다.

1. 기회균등법(loi pour l'égalité des chances)

2006년도에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였다.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일으킨 이 소요사태의 주된 원인이 노동과 주거에 있어서의 외국인 이민자들의 배제와 차별 그리고 그들의 소외에 있다고 보고 소수 인종인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런 프랑스 정부의 필요성의 연장선상에서 나오게 된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2006년 나온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Agence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égalité des chances)’의 설치였고, 다른 하나가 바로 ‘기회균등법(loi pour l'égalité des chances)’의 제정이었다. 특히 기회균등법의 제정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시도였다.

먼저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는 보다 활발하고 적절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 유치원에서부터 실시된 이 교육정책은 교육과 과외활동, 문화와 사회 또는 보건과 고용의 영역까지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또한 도시민감지역이나 우선교육이 강조되는 지역의 학교에서부터 시행하며 필요시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법령도 제안하면서⁵⁵⁾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을 위하여 교육영역에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의 실현을 현실화하기 시작하였다.

‘기회균등법’의 내용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외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다수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문제의 해결을 통한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의 경제적 여

55)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8, P. 7, “Synthèse du bilan de la mise en oeuvre du programme de réussite éducative.”

건 개선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프랑스 정부가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것은 위에서 말했듯 지난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 같은 심각한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경제적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이 법안에서 이민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도시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에게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위해 나이어린 연소자들에 대해서는 직업을 위한 견습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교육받는 청년들의 나이 제한을 기존의 16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기회균등법은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조치도 있었다.

그동안은 좋은 실력을 갖춘 외국인 이민자 출신이라도 입사 당시나 혹은 면접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볼 때 입사지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국적이나 인종 등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외국인 이민자 출신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번 ‘기회균등법’인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지원자들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익명으로 접수하도록 했으며 입사지원서에는 지원자의 사진을 비롯해서 이름이나 성, 그리고 출신지와 주소 등 지원자의 인종이나 국적 혹은 출신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이름이나 성 조차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 이민자들, 특히 프랑스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의 경우 이름이나 성만 가지고도 출신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2006년 ‘기회균등법’은 말 그대로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실력이나 능력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기회균등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고용계약(Contrat de première embauche: CPE)’이라는 것이었다. 최초고용계약은 피고용자인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고용자인 기업의 편의를 봐주게 되는 것으로 이 계약을 만든 프랑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최초고용계약’은 20인 이상의 고용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해당됐는데 26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에게 처음 2년 동안에는 고용주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물론 처음 계약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됐고 피고용자에게는 비록 젊은 기간 노동을 제공했더라도 해고 이후에는 실업보조금의 일부와 다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젊은이들 특히 외국인 이민자 출신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데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나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런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 제도가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늘 문제였던 것이다.

비록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제도가 바로 최초고용계약제도였지만 프랑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것은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 등에서 나타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가난한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에게 좀 더 쉽게 사회와 기업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프랑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의도했던 것은 저학력으로 인해 항상 수습이나 비정규직만 전전하는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에게 정규직으로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용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나 정규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한다는 의도로 만든 최초고용계약제도가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최초고용계약이라는 것이었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2년 미만의 임시직만 더 늘리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피고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얻은 직업이 정규직이 아닌 기약 없는 임시직으로 고착화 될 수 있고 새로운 고용창출 없이 오히려 고용불안 만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요즘의 이러한 현상은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차별퇴치에 관한 법안

2006년도에 프랑스 정부에 의해 제정되어 사회적 약자들인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에 고용문제에 있어 차별과 배제 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했던 ‘기회균등법’이 있었는데 그보다 앞선 2001년도에는 ‘차별퇴치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특히 고용부분에 있어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의 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해당 피해자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당한 기업이나 고용주 입장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증명의 기회를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서 자신의 행위가 차별과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 증명의 책임을 해당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직접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에 대한 증언이나 고발을 하는 모든 종류의 증인이나 고발자들은 이에 대한 처벌과 해고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대통령 산하에 아예 ‘차별퇴치평등 고용청(Haut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Egalité)’이 설립돼서 고용부문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를 관장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법안과 정부부처의 기반위에 2006년 프랑스 정부에서는 아예 ’기회균등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던 것이다.

제3절 문화정책 부분: 기회균등법 제47조 (2006년)

197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출신 이민자들의 영구 정착과 1980년대 이후 좌파 사회당 정부의 친 이민자 정책에 힘입어 이슬람 관련 종교 단체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이슬람 세력은 프랑스 내에서 사회적으로 점점 비중이 커지게 됐고 반인종주의 사회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동화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이슬람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따로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이후 프랑스 정부는 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7년 10월 ‘국립이민역사관(Cite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을 개관하였다. 국립이민역

사관의 개관은 프랑스 사회가 단일인종이나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프랑스를 만드는데 공헌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프랑스 사회의 다문화성에 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성 개념의 발전과 성찰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문화다양성 제고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 2005년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미비한 수준이었는데 2006년에 만들어진 ‘기회균등법 제47조’의 영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시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고통합위원회(Haut Conseil à l'intégration)’의 조사에 의하면 방송이나 문화부문에 있어 문화다양성의 대표성은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⁵⁶⁾ TV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의 유형별로 다양성 수준은 차별화 된다.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나 게임 프로그램,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인종적 혹은 문화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인종적 다양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토론자 선정이나 주요 패널 등의 문제에 있어 인종적 다양성이 가장 많이 부족한 부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자라든지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경우에도 문화다양성이 거의 없는 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직된 부문이기도 하다. 이에 최고통합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내서 문화

56)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2006, p. 60.

다양성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방송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등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⁵⁷⁾

또한 2006년에 제정된 ‘기회균등법 제47조’는 ‘최고영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가 대중매체 부문에서의 차별방지 및 사회 통합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방송부문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내용을 속적으로 조사해서 매년마다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회균등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최고영상위원회는 2007년에 ‘인종(race)’등에 관한 ‘다양성위원회(Observatoire de la diversité)’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제 4 절 언어정책 부분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집권기에 국가의 통합을 위하여 언어적 다양성을 없애는 단일 언어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 당시에는 프랑스의 지방마다 토착어 등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는데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런 지방의 다양한 언어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므로 오늘날 프랑스어 이룩한 발전과 지위는 이런 지방 언어들의 희생위에서 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 언어주의 정책은 오래전부터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881년 제3공화국은 프랑스 전 지역에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제도를 도입했고 학업을 하는 데 있어 프랑스어로만 교육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단일 언어주의 정책은 19세기 중반인 1885년

57) 방송에서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방송부문에 대한 외국인 이민자들의 직업적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이민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분야 체험 프로그램, 문화다양성을 감안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도화 한다든지 혹은 방송관련 학교, 시나리오 작가, 영상 기술자 등에 대한 외국인 이민자들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의 ‘쥘 페리 법안’부터 20세기인 1994년 ‘투봉 법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줄 페리 법안(loi Jules Ferry), 1885년

앞서 언급한대로 1881년 제3공화국은 전국에 무상의무교육과 더불어 모든 학교에서 프랑스어로만 교육시키는 강력한 법을 시행했었는데 이 법이 계속 이어져 온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1885년에 만들어진 ‘쥘 페리 법안’이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특히 프랑스 전역에 있는 초등교육이 의무화 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지방 토착 언어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프랑스어만이 전국적인 언어로서 프랑스어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지방 토착어 소멸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20세기 중반부터는 산업 발달에 따른 사람들의 도시로의 인구유입과 라디오의 보급 등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만을 단일 언어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프랑스어는 강력했던 프랑스 국력의 도움에 힘입어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외교적인 언어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어의 확고부동했던 외교 어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부터였고 영어와 함께 그동안 누려왔던 국제 외교 언어로서의 지위를 공유하게 됐다.

특히 외교무대에서는 그래도 아직 프랑스어와 영어가 거의 대등한 위치를 함께 누렸지만 사실 경제부분이나 과학부분에서는 오히려 영어가 프랑스어의 위상을 뛰어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경제나 과학 같은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내에서 조차도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젊은 프랑스인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어와 함께 영어가 차츰 그 위상을 확대하게 됐다.

프랑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 쓰이던 영어와 프랑스어를 합친 말을 ‘프랑글레(franglais)’라고 하기도 했는데 일종의 영어식 프랑스어였던 것이다. 이처럼 젊은 프랑스인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영어식 프랑스어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 정부에서는 고유한 프랑스어를 지키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2. 바 로리올 법안(loi Bas-Lauriol), 1975년

‘바 로리올 법안’은 1975년 국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공식적으로 제정됐던 법안이었다. 이 법안이 제정되게 된 것은 프랑스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사업 및 노동, 고용부분에서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영어 사용을 최대한으로 제한했지만 물론 예외를 두기도 해서 스파게티나 샌드위치 같이 외래어이기는 하지만 이미 프랑스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외국에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사용은 허용하기도 했다. 즉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백 프로 프랑스어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꼭 필요한 경우 영어 외래어의 사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제한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있는 일부 상점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간판이 아닌 영어식 간판을 사용하는 등 영어의 사용이 점차로 확산되게 됐다. 결국 ‘바 로리올 법안’이 만들어진 10년 후인 1985년 프랑스아카데미가 주축이 되고 회원이었던 장 뒤투르(Jean Dutourd)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를 영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어서 1989년부터는 영어식프랑스어의 색출작업이 강화 되었으며 아예 프랑스에서 추방해야 할 영어 단어의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영어표현 travel cheque도 프랑스어 표현 chèque de voyage를 사용하도록 했다.⁵⁸⁾

3.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법안 (일명 ‘투봉법’, loi Toubon), 1994년

영어식 프랑스어의 색출작업이 강화됐던 1989년에 이어 5년이 흐른 1994년에는 아예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의무화법안이 제정되게 된다. 일명 ‘투봉 법안’이라고 불렸던 이 법안에 따라서 매스컴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의 사용이 금지됐고 공공문서는 물론이고 간판이나 tv광고에서 외국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에 이른다. 이를 어길 시는 최고 50만 프랑의 벌금이나 금고 6개월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었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에서 프랑스어를 지키기 위해서 강경한 법안을 만든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프랑스 국민들을 위해서였다.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표면에 내세웠던 이유는 정당한 소비자는 모국어로 만들어진 문서나 상품설명서를 볼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외국어로 된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불편함과 손실을 끼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생각이었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의 90% 이상이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하니 프랑스 사람들도 프랑스어의 위기에 공감했는지도 모른다.

그 외에도 프랑스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문조사 했는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는 것을 언급한 사람들이 40%로 외국어를 아예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을 꼽은 10%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⁵⁹⁾

58) Jean-Louis Frérot, Panorama, CLE, 2001, p,11.

59) Jacky Girardet, panorama, CLE, 2001, p. 11.

이상 ‘쥘 페리 법안’이나 ‘바 로리올 법안’ 그리고 ‘투봉 법안’인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법안’ 등은 모두 프랑스어를 사수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단일 언어주의 정책의 대표들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프랑스 정부도 프랑스어의 보호를 위한 언어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지역 토착어를 말살하면서 프랑스어를 지키는 단일 언어주의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다언어주의로의 정책적 변화를 채택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 과거의 프랑스의 언어정책과는 달리 지역 토착언어 같은 소수 언어의 보호와 육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프랑스의 새로운 언어정책은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어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다른 소수 언어의 다양성도 지키고 지지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의 생각은 지역 토착 언어나 소수언어의 보존이 그 언어의 진정한 지위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역사적 유물 같은 문화유산으로만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살펴보면 작금의 프랑스는 과거의 단일 언어가 아닌 다언어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주요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상 언어로서의 프랑스어의 지위는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실무언어로 영어만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 이런 불안한 프랑스어의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자국어 외에 제2의외국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한 가지 언어만 쓰면 영어를 선택하지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 영어와 더불어 프랑스어를 선택하리라는 프랑스 정부의 계산에 의한 것이다. 인터넷의 사용 등에 힘입어 영어의 위상이 커져만 가고 프랑스어의 지위가 점차로 흔

제 6 장 프랑스의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

들리는 이때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어 사수를 위한 몸부림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7 장 나가는 말

오랜 식민시대와 외국인 이민자 문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전성기를 향유했던 프랑스에서의 다문화 현상과 다양한 이민자 문제의 출현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많은 의식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들의 제의에 의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법안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와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금전적인 지원이나 어떤 제도나 법안 등의 강제적 수단만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금전과 제도에 앞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을 심어주는 것이고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대부분의 교육제도나 내용들이 그런 것처럼 프랑스 사회의 특별한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결과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 하에 등장한 다문화교육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식과 접근방법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다문화교육도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장점, 단점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들과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사회를 위한 시사점과 필요조건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는 내용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에 관련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교육과 관련 있는 다양한 법제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전통적인 동화주의 모델을 고수해 온 국가인 만큼 다문화교육 정책에서도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서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집단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둔 정책이었다. 동화주의의 특성상 소수집단인 외국인 이민자들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프랑스 위주의 정책은 문제의 소지가 물론 있었지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진행하는 체계적인 구조와 시스템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깊은 목표와 연구 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우리에서 시사 하는바가 컸다.

프랑스의 다문화교육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학교 공교육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이 바로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이민자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이들 부모들과의 연계를 돋독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의 경우 외국인 이민자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 아무리 탁월하고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이민자 자녀들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하더라도 이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의 배려와 자세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탁월한 다문화교육이 있어도 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2005년 파리 방리유 사태 때 수많은 외국인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던 것은 다문화교육의 부재나 프로그램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소수집단인 외국인 이민자 출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학교 내에서 학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어려움은 바로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불

편한 시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가시적인 것들보다 이민자 자녀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주류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프랑스 다문화교육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2005년 사태이후 다문화교육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해서 그동안 중시했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에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의 입장에서 직업적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사회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고 자신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2005년과 2007년의 소요사태를 직접 일으켰었던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의 표면적인 불만의 배경에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불안과 불만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현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로 인해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접어 든 우리의 현실에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계도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부분과 함께 경제적인 자립을 돋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법제 부분에서는 크게 이주정책 부분과 고용정책 부분 그리고 문화정책 부분과 언어정책 부분, 다문화교육 정책 부분 등으로 나누어서 프랑스의 다양한 법안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프랑스 이민자 법안을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강경한 이민자 정책의 대명사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경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사르코지가 두 차례의 내무장관과 대통령을 역임했던 시기에 특히 강력한 이민자 정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르코지의 강한 이민자 정책이 결국 2005년과 2007년의 소요사태가 일어난 하나의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르코지의 이민정책과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됐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르코지에 의해 이민법이 수

차례 개정됐는데 새로운 이민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마다 사르코지를 비롯한 우파연합은 보수 우익의 환심과 표심을 의식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강력한 이민자 정책을 원하는 보수 우익을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르코지의 이민법의 특징은 가족재결합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프랑스 사회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이 시기 이민법은 이민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서 개인의 역량부족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소수집단인 이민자들을 포용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대신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03년 사르코지 이민법이 좋은 예이다. 물론 최종 법안은 논쟁 끝에 실시되지 않았지만⁶⁰⁾ 이민법 초안에는 노동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일을 하다 적발되는 이민자는 3500유로의 벌금과 3년 동안 프랑스에서 추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했다. 이는 과거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4500유로의 벌금과 3년의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그 책임을 정부나 기업대신 이민자 개인에게 묻는 것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사르코지 이민법에서의 문제는 네덜란드처럼 국가가 중시하는 특정 가치를 외국인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 진입을 막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사르코지는 수용통합계약에서 남녀평등원칙을 강조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남녀평등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부류인 이슬람 출신들을 염두에 두 것으로 여겨졌다. 주지하다시피 이슬람 문화에서 남녀평등의 개념은 존재하기 힘든 것이었는데 이것을 프랑스 이민에서 중시함으로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프랑스를 떠나거나 프랑스로 오지 말라는 메시지 역할을 이민법이 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강경한 이민자 정책을 드러내놓고 추진하던 사르코

60) 2003년 10월, 사르코지 이민법의 초안 내용을 놓고 벌였었던 의회에서의 논쟁의 결과 결국 채택되지 않고 유보되기에 이르렀다. www.senat.fr

지를 프랑스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 내지는 보수화로 볼 수 있는데 2005년과 2007년 소요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현상들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와 보수화의 근저에는 물론 프랑스를 옥죄는 경제적인 불황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의 길에 접어 든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화나 우경화의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소수집단인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협하는 명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참 고 문 헌

- 고대명, (2006), 최근 프랑스 소요사태에 대한 단상, 복지동향.
- 김선미, 김영순, (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Debbash, 김정곤역, (2004), 『프랑스 사회와 문화I』,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세훈,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 국토연구원.
- 박 단, (2005), 『프랑스의 문화전쟁, 공화국과 이슬람』, 책세상.
- _____, (2006),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 연구
- 박선희, (2010),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 국제정치논총,
- 안경식, (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엄한진, (2005), 「프랑스 이민자의 봉기, 그 원인은?」, 인권하루소식.
- 온재호, (2005), 「프랑스 소요사태와 이민 실태」, 정세와 정책,
- 이민경, (2007),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배경과 쟁점」, 교육과정평가
연구.
- 이학수, (2006), 『자유주의와 프랑스의 청년들』, 역사와 문화,
- 장명학, (2006), 「세계화와 인종갈등,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제노포비
아와 그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국제문화연구
- 조발그니, (2005), 「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정책 보완에 주는 시사점」, 사회학연구
- 조용환, (2008),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과제』, 동녘.
- 조정남, (2007),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참 고 문 헌

- 한승준, (2008), 「동화주의 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한국 행정학회
- 황정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한국여성정책원,
- 홍세화, (1995),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창작과비평사.
- P. Saramon, (2004), penser ou repenser les ZEP, Harmattan.
- P. Bouveau, (2000), Les ZEP, entre école et société, Harmattan.
- Francine Best, (1999), L'Echec scolaire, PUF,
- Sylvie Strudel, (2007), Enquête post-électoral présidentielle, 2007
- Miguel Benasayag, (2008), La chasse aux enfants, Editions la Découverte.
- Jean-Louis Frerot, (2001), Panorama, CLE.
- Fabien Ollier, (2004) L'idéologie multiculturalisme en France, L'Hamarttan.
- Meidad Bénichou, (2006), Le multiculturalisme, Bréal.
- Parakh Bhikhu, What is multiculturalism?
- Savidan Patrick, (2009), Le multicultralisme, paris, PUF.
- D'Iribarne Philippe,(2000), Cultures et mondialisation, Points.
- Dollfus Olivier, (2001), La mondialisation, Presses de Science Po.
- G. Vinsonneau, (2004), L'interculturel, principes et réalités à l'école, Sides.
- N. Voisin, (2001), Les enjeux de l'enseignement professionnel pour les nouveaux arrivants. hors série, no 3.

- F. Ouellet, (2002), L'éducation interculturelle et l'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Quelques pistes pour s'orienter dans la diversité des conceptions. VEL enjeux, no 129.
- C. Dubar, (2000), La Crise des identités: l'interprétation d'une mutation, PUF.

인터넷 참고 사이트

- www.ladocumentationfrancaise.fr : 프랑스 문서관리국사이트
- www.immigration.gouv.fr : 프랑스 이민국사이트
- www.education.gouv.fr : 프랑스 교육부사이트
- www.insee.fr : 프랑스 통계청사이트
- www.ofii.fr : 프랑스 이민통합사무소 사이트
- www.anaem.fr : 부처 간 이민관리 위원회사이트
- www.lemonde.fr : 르 몽드 사이트
- www.senat.fr : 프랑스 상원 사이트
- www.casnau.scola.ac-paris.fr : 카스나브 사이트
- www.vie-publique.fr : 프랑스 공공정책 사이트
- www.interieur.gouv.fr : 프랑스 내무부 사이트
- www.leparisien.fr : 르 파리지엥 사이트
- www.liberation.fr : 리베라시옹 사이트
- www.lepoint.fr : 르 포엥 사이트